

2018

# 사업분야별 표준 업무 매뉴얼





# 일 정 등 기

- 본 매뉴얼은 사업추진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일부 행정절차 누락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 분야별·단계별 이행해야 하는 각종 업무절차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누락, 착오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본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매뉴얼은 관련 법령·규정·지침의 개정, 제도개선 및 내부방침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종 절차가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으며, 또한 매뉴얼 구성상 주요 절차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시 반드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확인하고 각종 절차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본문 내용은 수시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코자 하오니, 본 매뉴얼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기술심사 담당관으로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건설분야)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 1장 사업 흐름도

1

## 2장 사업 분야별 표준 업무 절차

5

1. 공공건축물 분야	7
2. 도로 분야	17
3. 도시철도 분야	26
4. 주차장(환승) 분야	36
5. 방재시설(빗물펌프장) 분야	44
6. 공원 분야	52
7. 상수도 분야	61
8. 설비 분야	69

## 3장 사업 추진 단위업무 절차

77

1.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업무 절차	79
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업무 절차	80
3. 타당성조사 업무 절차	81
4. 투자심사 업무 절차	82
5.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	83
6. 교통영향분석 업무 절차	84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절차	85
8. 설계심의 업무 절차	86
9. 계약심사 업무 절차	87
10. 설계공모 업무 절차	88

## 4장 주요 행정 절차

89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91
2. 도시계획사업 추진 절차	92
3.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94
4. 토지취득 및 보상 절차	98
5. 계약 절차	99
6. 용역 절차	100
7. 학술용역 절차	102
8.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	103
9.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절차	107
10. 옥상녹화 추진 절차	110

## 5장 참 고 사 항

113

1. 건설산업 범위 및 계약 분류	115
2. 계약 방법별 흐름도	116
3. 공동계약 유형	117
4. 낙찰자 결정 방법	118
5.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120
6. 기술용역 적격심사 절차	121
7. 덤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절차	122
8. 공공건축물 사업추진 개선 절차도(시장방침)	123

# 1 장

## 사업 흐름도







# 2<sup>장</sup>

## 사업분야별 표준 업무 절차



# 1. 공공건축물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총괄건축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li> <li>- 총사업비 또는 설계용역비가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교육시설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 등</li> </ul> </li> <li>• 건축기획(기본구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li> <li>- 수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기획 신청(사업부서) → 건축기획안 작성(도시공간개선단) → 건축기획안 + 총괄건축가 자문의견 회신(도시공간개선단)</li> </ul> </li> <li>- 수행시기 : 기본개요 수립시(기본구상 발주 전)</li> </ul> </li> <li>• 통합기획 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 구성 : 기획부서+운영전문가+도기본+설계전문가+도시공간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의 컨셉, 컨텐츠, 사업기간, 사업수행방법,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등 논의</li> </ul> </li> </ul> </li> <li>• 사업별 로드맵 작성</li> <li>• 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 상정(필요시)</li> <li>• 사업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계획부서와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변경 등 사업 리스크 최소화</li> <li>- 주요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산정의 타당여부</li> <li>· 사업기간(심의, 설계, 인허가 등) 산정 적정여부</li> <li>· 사업계획(규모, 용도, 예상 민원 및 대책 등) 적정여부 등</li> </ul> </li> <li>- 구성 : 도기본 직원(10인) 및 외부 전문가</li> </ul> </li> <li>※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직접 수행시 사업적정성 검토는 '통합기획 TF팀'에서 수행</li> <li>※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li> <li>• 서울시건축기본조례 제36조(서울총괄건축 가운영 등)</li> <li>•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침 &lt;부시장 제116호 ('18. 5. 18.)&gt;</li> </ul>	도시공간개선단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뢰 전에 운영주체 선정</li> <li>-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용역 진행과정에 참여(사업부서)</li> </ul> </li> <li>※ 선정에 따른 리스크 요소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선정</li> <li>• 공유재산심의 여부 확인(자산관리과)</li> <li>• 리모델링 대상 건물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검토</li> <li>•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지반조사 실시여부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대문안 도심내 공사는 문화재발굴조사 의무화</li> <li>- 지반조사는 서울시 '지반정보시스템' 활용(지질주상도 등)</li> </ul> </li> <li>※ 문화·복지 등 시설사업은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 사업초기 단계부터 '공공사업 후견인' 역할 수행체계 구축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맞춤형 설계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계획 (시장방침 제26호, '16.2.10)</li> </ul>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공공청사, 문화재복원사업 등 38조2항 해당사업 제외)</li> <li>• 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 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38조</li>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KDI(PIMAC)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 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li> </ul> </li> </ul> </li> <li>•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li>- 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li> <li>※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 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사업부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획단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 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절차 이행</li> <li>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li>전시설계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li> <li>설계공모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 사업일관성 확보를 위한 계획방향성 및 계획지침 검토</li> <li>설계공모전 건축계획의 방향, 절차, 지침 검토</li> <li>수행대상 :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설계 발주</li> <li>수행시기 : 기본계획 용역 완료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li>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침 &lt;부시장 제116호 ('18. 5. 18.)&gt;</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황 능력</li> <li>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li>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li> </ul> </li> <li>※ 제외 대상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li> <li>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담당관
	공유재산 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재산의 취득, 처분 적정여부(기준가격 5억원 초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의 사정(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용도변경·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감면 등</li> <li>※ 매입, 신·증축 사업은 사전적정성검토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li> </ul>	자산관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li> <li>-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m<sup>2</sup> 이상, 처분 5,000m<sup>2</sup> 이상 재산</li> </ul> </li> <li>※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li> <li>• 계약심사단 심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기준 : 20억원 이상</li> <li>- 토지면적 기준 : 6천m<sup>2</sup>이상의 취득 및 5천m<sup>2</sup>이상의 처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li> <li>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li> </ul>	시의회 법률지원담당관
	개발제한 구역관리 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li> </ul>	국토교통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6조</li> <li>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공모방식</li> <li>- 일괄입찰방식(T.K)</li> <li>-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li>사업시행 방침 수립(총괄건축가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설계단계	설계용역 발주	<p>★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li>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li>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부서)
	설계용역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p>※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담당관
설계단계	설계공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2억1천만원 이상</li> <li>-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공모방식 우선 적용</li> <li>- 설계비 추정가격 3.2억원 이상은 국제공모 방식 적용대상</li> <li>- 시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기술심사 등) 이행 후 설계공모 진행</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준비(20일 이상): 공모방식 결정,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심사위원회 구성 등</li> <li>· 공모시행(90일 이상): 설계공모 공고, 작품접수 및 심사 전 검토, 심사, 심사결과 통보 등</li> <li>· 시상 및 보상</li> </ul> </li>   <li>•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설계공모 발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사업중 시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 공원, 광장, 교량 등)의 발주에 관한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li> <li>•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li> <li>•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li> </ul> <p>※설계비 추정가격(2.1억, 3.2억)은 고시금액 근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p>	도시공간개선단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설계 정의 :</b>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li> </ul> <p>※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li>• <b>측량 및 지반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li> <li>• <b>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li> </ul> <p>※ 전시·관람시설 : 기본설계 용역 이전에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와 전시설계 병행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신축, 중·개축 등 건축행위시 문화재청 협의</li> <li>•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등</li> </ul> </li> <li>•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아래 규모의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연면적 15,000㎡이상(도시교통정비지역)</li> <li>· 공공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5,000㎡이상(도시교통정비지역) 등</li> </ul> </li> </ul> </li> <li>• 도시 디자인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광장, 자전거보관대, 가로녹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p>※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p> </li> </ul> </li> <li>• 공공건축물 경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운수시설중 여객용 시설</li> </ul> </li> </ul> </li> <li>• 건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li> <li>2)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li> <li>3)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o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사업 실태점검 결과 (평가담당관'16.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22조</li> </ul>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li> <li>•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li> </ul>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li> </ul>	도시공간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조례 제24조 제1항</li> </ul>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4조의2</li> <li>• 건축조례 제7조</li> </ul>	건축기획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건축물 협의</li> <li>•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 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 등(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별표 1 참조)</li> </ul> </li> <li>•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li> <li>•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li> <li>• 설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li> <li>-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29조</li> <li>•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조</li>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li>•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li>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관할구청 하천관리과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 담당관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li>※ 공공건축물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li>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li>• 설계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별주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li> <li>•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함</li> <li>-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투자사업 포함)</li> <li>·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발주하는 건설공사</li> <li>·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작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ul> </li> <li>※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li>• 녹색건축물 인증 : 신축, 증축, 리모델링하는 연면적 3,000m<sup>2</sup>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을 받아야 함</li> <li>• 지능형건축물 인증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3,000m<sup>2</sup> 이상 건축물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li>•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li> <li>• 건축법 제65조의2</li> </ul>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계약단계	토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li> <li>•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li> </ul>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 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험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li>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심사과 안전감사담당관</p> <p style="text-align: right;">재무과</p>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계약 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발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ul> </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제9조</li> <li>• 계약업무 매뉴얼 (재무국)</li> </ul>
	↓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li> <li>• 착공신고 (공사 착수시)</li> <li>• 건축물 철거 신고 (철거예정 3일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li>• 건축법 제21조</li> <li>• 건축법 제36조</li> </ul>	<span style="color: blue;">관할 구청</span> <span style="color: blue;">관할 구청</span>
	↓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ul>	계약심사과
	↓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li> <li>-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li> <li>-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빌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협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용건축물 협의</b> - 공사 완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승인을 한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 (건축물대장에 설계자,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 기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29조,</li> <li>• 건축법 제22조</li> </ul>	관할 구청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li>• <b>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li> <li>- 공개방법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상황에 따라 위치와 규격을 정하여 표지판으로 설치</li> <li>- 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li> <li>-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건립비용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li> <li>•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li> </ul>	재무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b>(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li> </ul> </li> <li>• <b>시설물 관리용역</b>(공고, 업체선정, 계약)</li> <li>• <b>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b>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b>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b></li> <li>• <b>하자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공공건축물 분야 상세 업무절차는 “**공공건축물 업무절차 가이드라인(도시공간개선단)**” 활용

## 2. 도로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 단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li> </ul>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 구성 : 기획부서+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등 포함)</li> </ul> </li> </ul>		갈등조정담당관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li> <li>• 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 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38조</li>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KDI(PIMAC)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 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li> <li>※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li> </ul> </li> <li>•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li>- 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 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재정관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li> <li>같은법시행령 제8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p>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p>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갈등조정담당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 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 (사업부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획단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li> <li>- 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 시설물 유지관리계획</li> <li>- 환경보전계획</li> <li>-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 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절차 이행</li> <li>- 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 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 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 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li>-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li> </ul> </li> <li>※ 제외 대상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li> <li>•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 담당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6조</li> <li>• 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 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공모방식</li> <li>- 일괄입찰방식(T.K)</li> <li>-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사업시행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방침 수립</li> </ul>		
설계단계	설계용역 발주	<p>★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p>•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p>※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p>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p> <p>기술심사 담당관</p> <p>기술심사 담당관</p> <p>계약심사과</p> <p>안전감사 담당관</p> <p>재무과</p>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설계 정의 :</b>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li> <li>※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li> <li>※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측량 및 지반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략환경영향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로신설 : 4km이상(폭 25m이상인도로) 도로확장 : 10km이상(2차로 이상인 도로) 신설+확장 : (신설구간길이합/4km)+(확장구간 길이합/10km) &gt; 1</li> <li>- 시기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시 디자인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로시설물(교량, 고가, 입체교차, 보도육교, 지하보도,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li> <li>- 내용 : 가로, 광장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교량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계 VE(설계의 60%진행 시 수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li>   <li>• 설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li> <li>-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5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li>※ 보·차도 등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li>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li>• 설계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빌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로신설 : 2km~4km(폭 25m이상인 도로) 도로확장 : 5km~10km미만(2차로 이상인 도로)</li> <li>- 시기 : 실시계획 고시 이전</li> </ul> </li>   <li>•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아래 규모의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li> <li>· 도로건설 : 총길이 5km 이상인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li> </ul> </li> <li>- 시기 : 실시계획 고시 이전</li> </ul> </li>   <li>• 설계 VE(설계의 60%진행 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함</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 투자사업 포함)</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빌주하는 건설공사</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작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li>※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li>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li> <li>· 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 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 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li> <li>•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2016.2.15.)</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ul>
계약단계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계약단계	토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li> <li>•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li> </ul> <p>※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li> </ul>
계약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 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태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li>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약 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li>•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 감독관 위촉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li> </ul> </li> <li>• 도로점용(굴착) 허가</li> <li>•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li> </ul> </li> <li>• 노선지정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li> </ul> </li> <li>• 도로명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 : 공사관리부서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 안전행정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명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 : 공사관리부서 → 주관부서 → 자치구 의견수렴 → 시지명위원회 자문 → 국가지명위원회(국립지리원)</li> </ul> </li> <li>• 최초통행료 의회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 관련자료 작성 → 주관부서 요청</li> </ul> </li> <li>• 도로표지 안내표지판 문안 협의</li> <li>•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고시</li> <li>• 차량통행제한 공고</li> <li>• 유지관리계획 승인</li> <li>• 통행료 수납공고, 관리운영권 설정</li> <li>• 도로사용 개시 공고</li> </ul>		국립지리원 (국가지명위원회)
			• 서울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공공투자관리센터 시의회
			• 도로표지규칙	교통운영과(1km미만) 국토교통부(1km이상)
			• 도로법 제48조, 자동차전용 도로지정에 관한 지침	서울지방경찰청 도로시설과
			• 도로법 제76조	도로시설과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26조	
			• 도로법 제39조	
↓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ul>	계약심사과
↓	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li>• 사업완료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즉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li> </ul>	
↓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li> <li>시행령 제86조</li> </ul>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합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li> </ul>	

### 3. 도시철도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 획 단 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및 고시 (10년단위 중장기계획)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수립 승인요청 (교통수요예측, 경제성 등 평가, 노선망, 자금운용계획 수립, 도시철도망의 중기·장기계획, 필요한 재원의 조달)</li> <li>도시철도망 계획이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 재검토</li> <li>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구성 : 기획부서+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등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철도법 제5조 제6항</li> </ul>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li> <li>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정법 제38조</li> <li>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KDI(PIMAC)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li> </ul> </li> <li>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실시</li> <li>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행자부고시 2016-12호</li> <li>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li> <li>같은법시행령 제81조</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 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 (사업부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획단계	기본계획용역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li> </ul> </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의 적정성 검토, 개략공사비 산출</li> <li>-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li> <li>-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li> <li>-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명</li> <li>-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li> <li>- 건설기간중 도시철도건설 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li> <li>-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의 필요한 사항</li> </ul> </li> <li>• 공청회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li> <li>• 시의회 의견 청취</li> </ul>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6조 제1항~3항</li> <li>•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li> <li>•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li> </ul>	국토교통부 환경부
	노선별기본계획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노선,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 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6조 4항</li> </ul>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 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 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li>-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li> </ul> </li> <li>※ 제외 대상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li> <li>•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6조</li> <li>• 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 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설계단계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공모방식</li> <li>- 일괄입찰방식(T.K)</li> <li>-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설계용역 발주		<p>★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p>•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p>※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 담당관  계약심사과  안전감사 담당관  재무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설계 정의</b>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li> <li>※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li> <li>※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측량 및 지반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시 디자인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철도시설(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li> </ul>	도시공간 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도시철도시설</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법 제30조</li> <li>• 경관조례 제23조</li> </ul>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재해영향성 검토</b>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조</li>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계 V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설신기술 활용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li> <li>-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li>※ 보차도 등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li>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li>• 설계 견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 · 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별주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km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 면적이 10만m<sup>2</sup> 이상인 것</li> </ul> </li> <li>•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아래 규모의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km 이상</li> </ul> </li> </ul> </li> <li>•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중 선로의 길이가 10km 이상인 것</li> </ul> </li> <li>• 문화재 지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li> <li>• 교통안전진단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로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길이 1km 이상</li> </ul> </li> <li>•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함</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 투자사업 포함)</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22조</li> </ul>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li> <li>•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li> </ul>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법 제34조</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빌주하는 건설공사</li>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ul> </li> </ul> <p>※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 )</p> <p>•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li> </ul> <p>•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p> <p>• 대용량 전력수전 가능여부 협의</p>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2016.2.15.)	빌주부서 (계약심사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한국전력공사 규정	한국전력공사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2</li> </ul>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서</li> <li>도시철도건설의 기본설계서</li> <li>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도시철도 시설 개요</li> <li>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서류</li> <li>도시철도 건설기간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li> <li>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li> <li>사업계획의 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li> <li>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적은 서류</li> <li>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1부터 5천분의1까지 의 것만 해당)</li> </ul>		
				•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국토교통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공고 (일간신문 및 시보) 20일간</li> <li>• 공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li> <li>- 도시철도부지의 위치</li> <li>-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li> <li>- 도시철도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li> </ul> </li> <li>• 토지소유자 등 통보</li> <li>• 소유자 등 의견제출 및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li> </ul>	
	인가허가 등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li> <li>•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li> <li>•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li> <li>•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li> <li>•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인·허가 등 의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7조 제2항</li> </ul>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수용을 위한 토지보상법령상 의견청취 실시(토지보상법 개정, '16.6.30. 시행)</li> <li>-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8조 제1항</li> </ul>	국토교통부
	관계행정 기관 일괄 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 허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li> </ul>	
	관계기관 의견조치 계획 수립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 허가 등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8조4항 시행령 제9조</li> </ul>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 내용 관보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법 제7조 6항</li> </ul>	국토교통부
	지형도면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도 및 정거장 현황 위치도</li> <li>•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li> </ul>	관할 구청 등
	토지보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건조서 작성</li> <li>• 보상계획공고·공람</li> <li>• 보상심의위원회 심의</li> <li>• 감정평가</li> <li>• 보상협의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 제19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 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태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li>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li>•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ul> </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제9조</li> <li>• 계약업무 매뉴얼 (재무국)</li> </ul>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구 협의 → 도로굴착허가, 폐기물발생신고</li> <li>• 지방경찰청 협의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li> <li>•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 지하매설물</li> </ul> <p>※ 명예 감독관 위촉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용신청</li> <li>•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변전소)</li> <li>• 전기 사용전 검사(변전소 및 전기실)</li> <li>• 전력공급 신청(변전소)</li> </ul>		관할 구청 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력공사 규정</li> <li>•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3조</li> </ul>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수공사 신청</li> <li>• 고압가스제조(냉동) 허가신청</li> <li>• 정화조공사 착공 신고</li>   <li>• CCTV 설치 행정예고</li> <li>•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li> <li>• 무선국 개설 허가신청(무선통신설비)</li> <li>• 자가전기 통신설비 설치 신고(주전송설비, 보조전송설비)</li>   <li>• 차량제작 구매</li> <li>• 차량제작설계 검토 및 승인</li> <li>•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및 완성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급수조례 제6조</li> <li>• 고압가스안전관리 제4조</li> <li>• 하수도법 제34조</li>   <li>•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09조</li> <li>• 전파법 제21조</li> <li>•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57조</li>   <li>• 철도 안전법</li> </ul>	수도사업소 관할 구청 관할 구청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ul>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li> <li>-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li> <li>-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협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li>• 승강설비 완성 검사(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li> <li>• 저수조 청소 및 소독 필증</li> <li>• 소방시설 완공검사</li> <li>• 고압가스제조(냉동) 허가 완성 검사</li> <li>• 정화조 준공검사</li> <li>• 호이스트 안전인증검사</li>   <li>•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 및 이동통신 구내선로 및 방송공동수신설비)</li> </ul> </li> <li>•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 신고(주전송설비, 보조전송설비)</li> <li>•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신고</li>   <li>• 연간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 수립·협의</li> <li>•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종별(개별) 안전검사 및 시운전</li> <li>- 시설물 견증시험 및 영업시운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li>• 승강기법 제13조</li> <li>• 수도법 제21조</li> <li>• 소방시설공사업 제14조</li>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li> <li>• 하수도법 제37조</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li>   <li>• 정보통신사업법 36조</li> <li>•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57조</li> <li>• 전파법 제24조</li> </ul>	관할 자치구 서울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A,B,C 등급의 경우)</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점검 : 3년 1회 이상(A등급), 2년 1회 이상(B,C등급)</li> <li>- 정밀안전진단 : 6년 1회이상(A등급), 5년 1회 이상(B,C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는 완공 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li> </ul> </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li>• 하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li> </ul>	

## 4. 주차장(환승)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 구성 : 기획부서+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등 포함)</li> </ul> </li> </ul> <p>※ 필요시 운영주체 선정 및 포함 검토</p>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li> <li>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정법 제38조</li> <li>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KDI(PIMAC)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li> <li>(“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li> </ul> </li> </ul> <p>※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 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갈등조정담당관
기획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 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 (사업부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 계획</li> <li>-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 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절차 이행</li> <li>- 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li>• 전시설계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 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 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 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li>-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li> </ul> </li> <li>※ 제외 대상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li> <li>•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 담당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6조</li> <li>• 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 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10px;"> <b>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공모방식</li> <li>- 일괄입찰방식(T.K)</li> <li>-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b>사업시행 방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방침 수립</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설계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b>★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p>•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기본설계 정의 :</b>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li>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p>※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p> <p>※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측량 및 지반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신축, 증개축 등 건축행위시 문화재청 협의</b></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등</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아래 규모의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연면적 13,000㎡ 이상(도시교통정비지역)</li> </ul> </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도시 디자인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교통관련시설(주차장 관리소 등)</li> </ul> </li> </ul> <p>※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공공건축물 경관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운수시설중 여객용 시설</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22조</li> </ul>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li> <li>•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li> </ul>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li> </ul>	도시공간 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조례 제24조 제1항</li> </ul>	도시관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li> <li>2)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li> <li>3)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ol> </li> </ul> </li> <li>• 공용건축물 협의</li> <li>•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li> <li>•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li> <li>• 설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li> <li>-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4조의2</li> <li>• 건축조례 제7조</li> </ul>	건축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29조</li> </ul>	관할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5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li>※ 가로, 출입로 등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li>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li>• 설계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 · 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빌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li> <li>•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함</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 투자사업 포함)</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빌주하는 건설공사</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ul> <p>※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li> <li>· 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 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 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li> <li>•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2016.2.15.)</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ul>
계약단계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계약단계	토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li> <li>•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li> </ul> <p>※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li> </ul>
계약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 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험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li>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약 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li>•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 감독관 위촉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li> </ul> </li> <li>• 도로점용(굴착) 허가</li> <li>•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ul>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ul>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협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ul>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li> </ul>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li>• 하자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5. 방재시설(빗물펌프장)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li> </ul>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 구성 : 기획부서+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등 포함)</li> </ul> </li> </ul>		갈등조정담당관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li> <li>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정법 제38조</li> <li>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KDI(PIMAC)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li> </ul> </li> </ul> <p>※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li>- 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li> </ul>	같은법시행령 제81조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p>★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사업부서)</li> </ul> </li> </ul>		갈등조정담당관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li> <li>시설물 유지관리계획</li> <li>환경보전·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절차 이행</li> <li>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li>전시설계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p>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p>
기획단계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li>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li> </ul> </li> <li>※ 제외 대상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li> <li>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공모방식</li> <li>일괄입찰방식(T.K)</li> <li>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6조</li> <li>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사업시행 방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시행 방침 수립</li> </ul>		
설계단계	설계용역 발주	<p>★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p>•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술심사 담당관  기술심사 담당관  계약심사과  안전감사 담당관  재무과
	기본설계	<p>• 기본설계 정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p>※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p> <p>※ 설계 자문단 구성·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li>• <b>측량 및 지반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li> <li>• <b>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li> <li>• <b>도시 디자인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전기통신설비 등 도시디자인 조례 별표 해당 시설물 ※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li> </ul> </li> <li>• <b>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하천시설(수문 등),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별표’ 야간경관 시설 참고</li> </ul> </li> <li>• <b>설계 V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li> <li>• <b>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신축, 증개축 등 건축행위시 문화재청 협의</b></li> <li>• <b>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sup>2</sup> 이상 등</li> </ul> </li> <li>• <b>건설신기술 활용 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li> <li>• <b>설계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li> </ul>	도시공간 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조례 제23조</li> </ul>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li> </ul>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22조</li> </ul>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5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시설계 정의</b>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ul> <p>※ 공공건축물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ul> <p>• 설계 건설사업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p>• 설계 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함</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 투자사업 포함)</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발주하는 건설공사</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ul> </li>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ul> <p>※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p> <p>•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 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 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li> </ul> <p>•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2016.2.15.)</li> </ul>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ul>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ul> </li> <li>•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토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li> <li>•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li> </ul> <p>※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li> </ul>
계약 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 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태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li>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li>•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ul> </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안전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제9조</li> <li>• 계약업무 매뉴얼 (재무국)</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li> </ul> <p>※ 명예 감독관 위촉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li>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점용(굴착)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법 제38조</li> </ul>	관할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4조, 제9조</li> </ul>	교통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공신고 (공사 착수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제21조</li> </ul>	관할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재 채취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골재채취법 제22조</li> </ul>	관할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수 유출 저감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수법 제9조</li> </ul>	관할 구청
설계변경 제한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빌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ul>	계약심사과
준공 제한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li> <li>-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li> <li>-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빌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li>공용건축물 협의 - 공사 완료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제29조</li> </ul>	관할 구청
공사참여자 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li> </ul> </li> <li>• 시설물 관리용역(공고, 업체선정, 계약)</li>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합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li>• 하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6. 공원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 획 단 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 구성 : 기획부서+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등 포함)</li> </ul> </li> </ul>		갈등조정담당관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li> <li>• 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 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38조</li>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모든 기술 용역(도시계획, 교통, 소방 등 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 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li> </ul> </li> </ul> <p>※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 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갈등조정담당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통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통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 공통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사업부서)</li> </ul> </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획단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li> <li>-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 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절차 이행</li> <li>- 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li>• 전시설계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 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조성 계획(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반영,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li> </ul> </li> <li>• 사전 환경성 검토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B와 중복된 공원의 조성계획(5천m<sup>2</sup>이상) 등</li> </ul> </li> <li>• GB 관리계획 승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B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li> </ul> </li> <li>• 주민의견청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2이상의 일간신문과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에 공고 (14일 이상) (변경) 공보와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에 공고(14일 이상)</li> <li>- 유관부서 협의 일괄시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li> <li>•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li> <li>•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2</li> <li>•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li> <li>•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 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 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li>-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li> </ul> </li> <li>※ 제외 대상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li> <li>•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 담당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li> <li>-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6조</li> <li>• 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 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개발제한 구역관리 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li> </ul>	국토교통부
	공사수행 방식 결정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공모방식</li> <li>- 일괄입찰방식(T·K)</li> <li>-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설계단계	사업시행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방침 수립</li> </ul>		
	설계용역 발주	<p>★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설계용역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li>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li>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계약심사과  안전감사 담당관  재무과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정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협의·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li> <li>※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li> <li>※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li>• 측량 및 지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li> <li>• 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p>• 도시 디자인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공원, 광장, 가로녹지시설(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li> </ul> <p>※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p> <p>•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야간경관 시설(보안등, 공원등) 등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별표' 경관심의 대상시설 참고</li> </ul> <p>•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설치 등</li> </ul> <p>• 설계 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p>• 건설신기술 활용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p>• 설계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li> <li>-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li> </ul>	도시공간 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법 제30조</li> <li>• 경관조례 제23조</li> </ul>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조</li>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실시설계	실시설계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ul> <p>※ 공원·광장 등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ul> <p>• 설계 건설사업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빌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환경영향평가</b>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중 사업면적이 5만m<sup>2</sup>~10만m<sup>2</sup>미만인 것</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이 5만m<sup>2</sup>~10만m<sup>2</sup>미만인 것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m<sup>2</sup>~20m<sup>2</sup>미만인 것</li> </ul> </li> <li>- 시기 : 실시계획 인가 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22조</li> </ul>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통영향평가</b>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아래 규모의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부지면적 300,000m<sup>2</sup> 이상</li> <li>·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등) : 부지면적 12,000m<sup>2</sup> 이상</li> <li>·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등) : 건축면적 10,000m<sup>2</sup> 이상</li> </ul> </li> <li>- 시기 : 실시계획 인가 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li> <li>•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li> </ul>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계 V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함</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 투자사업 포함)</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벌주하는 건설공사</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ul> </li>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li>※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 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 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2016.2.15.)</li> </ul>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F(Barrier Free) 인증</b>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공원조성 계획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조성계획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안) 및 설명PPT자료 제출</li> </ul> </li> <li>•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등</li> </ul> </li> <li>• 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변경)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계획(변경) 결정 요청 :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심의결과 보완 후)</li> </ul> </li> <li>• 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고시(시보게재) 및 공람 관계기관·부서에 결정내용 통보</li> </ul> </li> <li>• 지형도면 작성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게재, 결과보고, 유관기관·부서에 통보</li> </ul> </li> <li>•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공람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B의 경우 고시 전 행위허가</li> <li>-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람공고</li> <li>- 유관기관·부서 협의 일괄시행</li> </ul> </li> <li>•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게재, 결과보고, 유관기관·부서에 통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li> <li>•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6조의2</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2조(관련부서 협의)</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li> <li>• 동법 시행령 제100조</li> </ul>		
계약단계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토지보상	토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li> <li>•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li> </ul> <p>※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li> </ul>		
공사발주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 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약 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li>•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li> </ul> <p>※ 명예 감독관 위촉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제9조</li> <li>• 계약업무 매뉴얼 (재무국)</li> </ul>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li>•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ul>		계약심사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li> <li>-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li> <li>-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빌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협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li>• 사업완료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즉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ul>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i> </ul>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운 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합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li>• 하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7. 상수도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 획 단 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확충, 개량을 포함한 목표연도 건설 계획</li> </ul> </li> <li>• 중기재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li> </ul> </li> <li>• 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법 제4조</li> <li>• 예산회계법 제16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li> <li>- 구성 : 기획부서+공사관련 부서(공사, 유지관리 등)</li> </ul> </li> </ul>		
	예비타당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공공청사, 문화재복원사업 등 38조2항 해당사업 제외)</li> <li>• 목적 :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li> <li>• 주관 : 기획재정부장관&lt;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38조</li>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li> </ul>	KDI(PIMAC)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모든 기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 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li> <li>(“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li> </ul> </li> <li>※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li> <li>• 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재정관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li>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기획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총 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사업부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li> <li>시설품 유지관리계획</li> <li>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 이행</li> <li>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li>전시설계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추진반)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중앙심사 대상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자치구는 200억원 이상) ※ 제외 대상 :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li> <li>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투자사업 심사지침</li> <li>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3조제2항제2호가목 [별표](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65('16. 1. 19.)호)</li> </ul>	재정관리 담당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6조</li> <li>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기획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10px;"> <b>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공모방식</li> <li>- 일괄입찰방식(T·K)</li> <li>-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 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b>사업시행 방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방침 수립</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설계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b>★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p>•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p>※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설계 정의 :</b>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li>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p>※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p> <p>※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li> <li>- 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측량 및 지반조사</b></li> <li>-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b></li> <li>-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시 디자인 심의</b></li> <li>- 대상 : 도로점용허가시설물(소화전), 도로시설물(맨홀, 방호울타리)</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b></li> <li>- 대상 : 야간경관 시설 등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별표’ 경관심의 대상시설 참고</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계 VE</b></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b></li> <li>- 대상 : 사업 면적이 5천m<sup>2</sup> 이상, 길이가 2km 이상</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설신기술 활용 심의</b></li> <li>-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 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li> </ul>	도시공간 개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법 제30조</li> <li>• 경관조례 제23조</li> </ul>	도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조</li>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5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부지가 공원 도시계획시설에 위치한 경우</li> </ul> </li>   <li>• 설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li> <li>-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li> </ul>	공원조성과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li>   <li>• 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li>• 설계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 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li>   <li>•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투자사업 포함)</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발주하는 건설공사</li> <li>·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ul> </li> <li>-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ul> </li>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li> <li>- 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 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 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ul>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 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계약단계	토지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의 보상계획</li> <li>•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14일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li> </ul> <p>※ 개별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청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조</li> </ul>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p>※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제9조</li> <li>• 계약업무 매뉴얼 (재무국)</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li> </ul> <p>※ 명예 감독관 위촉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굴착) 허가</li> <li>•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ul>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 제61조</li> <li>•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li> </ul>	관할 구청 교통운영과
	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li> <li>-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li> <li>-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협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li>• 사업완료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즉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ul>	계약심사과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li> </ul>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li> </ul> </li> <li>• 시설물 관리용역(공고, 업체선정, 계약)</li>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li>• 하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p>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li> </ul>	

## 8. 설비 분야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 획 단 계	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내용에 관한 기본적 개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필요성</li> <li>-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li> <li>-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li> <li>-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li> <li>-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li> <li>-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검토</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8조</li> </ul>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모든 기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폐기물처리 용역 등)은 제외</li> </ul> </li> <li>• 목적 :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li> <li>• 시기 :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반영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li> </ul>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개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 절차이고,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사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li> </ul> </li> </ul> <p>※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받은 것으로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행자부고시 2016-1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사업</li> <li>- 목적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li> <li>- 내용 :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li> </ul> </li> </ul> <p>※ 갈등대응계획 수립(갈등진단표 작성 → 갈등조정담당관 제출)    ※ 예비갈등영향분석 실시(주민설명회 실시) – ‘18.12월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8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기 획 단 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 시행 우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 사전 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조회) 하여 공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 발주</li> <li>공투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li> <li>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사업부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ul>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 인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li> <li>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li> <li>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 순위      연차별 공사시행계획</li> <li>시설물 유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li> <li>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li> <li>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li> <li>2030 서울생활권 계획 협의대상 여부 항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등 절차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과의 적합성 확인 절차 이행</li> <li>생활권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표기(기술용역타당성심사 / 학술용역심사)</li> </ul> </li> <li>전시설계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li> <li>2030 서울생활권 운영지침</li> </ul>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 추진반)
	투자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자치구 :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의뢰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li> <li>목적 : 투자 사업의 타당성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li> <li>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li> <li>국가의 장기계획 및 사회정책과의 부합성</li> <li>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li> </ul> </li> <li>※ 중앙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이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7조</li> <li>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li> <li>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3조 및 별표</li> </ul>	재정관리 담당관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의 :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li> <li>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li> <li>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 제36조</li> <li>지방재정법 제38조2항</li> <li>지방재정법 제41조</li> </ul>	예산담당관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공모방식</li> <li>일괄입찰방식(T.K)</li> <li>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li> <li>기타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li> </ul>	
	사업시행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방침 수립</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설계용역 발주	<p>★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 우선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공사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설계</li> <li>- 설계용역 발주 방침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추진 → 발주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li> </ul> <p>•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토목, 건축 : 용역비 2억원 이상 전기, 기계, 조경 : 용역비 1억원 이상</li> <li>- 내용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및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li> </ul> <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용역비 2.1억원 이상</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등(조달 발주사업은 제외)</li> </ul> <p>• 일상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li> <li>- 추정가격 5억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li> <li>-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명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수의계약 등</li> </ul> <p>• 계약심의위원회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p>※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5.15.)</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ul>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재무과
기본설계		<p>• 기본설계 정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작성</li> <li>- 기본설계시 주민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 공람공고)</li> <li>-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의 반영</li> </ul> <p>※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설계 자문단 구성 · 운영(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단계	기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갈등영향분석 실시(1,2등급 사업) – ‘18.12월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설명회안 작성(사업부서) → 검토(갈등조정담당관) → 주민설명회 실시(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li> </ul> </li> <li>공사비 증가 등에 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함</li> <li>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 결정</li> </ul> </li> <li>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 사항</li> </ul> </li> <li>건설신기술 활용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li> <li>내용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li> </ul> </li> <li>설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 소규모 교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공사</li> </ul> </li> <li>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li> <li>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li> <li>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의 타당성</li> <li>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환경성</li> </ul> </li> <li>심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전</li> <li>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li> <li>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전</li> <li>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변경시 : 설계변경 전</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li> <li>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li> <li>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li> </ul>	기술심사 담당관	
실시설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설계 정의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            ※ 공공건축물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li> <li>갈등영향분석 검토 – ‘18.12월 시행 예정</li> <li>설계 건설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 등(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단계 시행)</li> <li>내용 :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li>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li> </ul>	갈등조정담당관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 단계	설계 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 VE</li> <li>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함</li> <li>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 민간투자사업 포함)</li>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실시설계 후 3년 이상 지난뒤 발주하는 건설공사</li> <li>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사중 10%이상 공사비증액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항</li> </ul> </li> <li>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각각 1회 이상 시행</li> <li>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시행</li> </ul> </li> </ul> <p>※ 총공사비 50억이상~100억미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확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li> </ul>	계약심사과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li> <li>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li> <li>심사대상 : 특정제품의 품명당 원가가 5천만원 초과 특정공법 설계금액(제경비 제외)이 1억원 초과</li> <li>특정제품 심사에 신기술 포함하여 검토</li> <li>복수의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선정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2부시장 방침 제38호(2016.2.15.)</li> </ul>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Barrier Free) 인증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중 예비인증, 공사완료후 본인증을 받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의 내진설계</li> <li>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li> </ul>	
설계의 안정성 검토	설계의 안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 건설공사, 10층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등</li> <li>내용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li> <li>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li> </ul>	
	계약 단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심사</li> <li>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조경, 설비는 3억원 이상)</li> <li>목적 :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 사전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약 단 계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li> </ul> </li> <li>•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li> <li>- 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대상임</li> </ul> </li> <li>• 공사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 요건, 수요 기관 요구사항,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li> <li>- 과정 : 예산검토 → 면허(종합, 전문건설업) 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li> <li>•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공사비), 관급 자재비, 분리 발주 공사비 등), 공사 내용 (당해 목적물, 폐기물 처리, 수탁 공사 여부 등) 등 검토</li> <li>-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법적요건과 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에 대한 검토</li> <li>- 품질확보를 위한 자격요구와 경쟁성 제고를 위한 자격완화가 공사 특성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자격제한 강화,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자격제한 완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li>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li> </ul>	안전감사 담당관  재무과
시 공 및 유 지 관 리	공사관리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공상태 관리 및 점검</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조치</li> <li>• 건설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및 하도급관리 등에 관한 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이행여부 관리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6조</li>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li> </ul>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li> <l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li> <li>• 기타 현장여건 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li> </ul> <p>• 계약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공사</li> </ul> <p>¶설계변경 위원회 심의(도시기반시설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회 : 1건당 5천만원 이상 10억 미만 증·감액</li> <li>- 본부위원회 : 1건당 10억 이상 증·감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li> <li>•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기준</li> </ul>

구분	행정절차	업무 내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준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li> <li>-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li> <li>- 구조계산서</li> <li>-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li> <li>-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공사의 적용한 경우)</li> </ul> </li> <li>• 예비 준공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2개월전 발주부서와 유지관리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 실시</li> </ul> </li> </ul>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행 과정에 참여 한 관계자 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공무원, 용역기관의 담당자, 감리원, 시공자의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감리보고서에 수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9조</li> </ul>
	건설공사 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내용 및 효과 조사 분석 후 평가서 작성</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공사비 및 공사 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li> <li>-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500억원 이상)</li> <li>- 해당 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시행령 제86조</li> </ul>
	운영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입찰공고, 업체선정,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li> </ul> </li> <li>• 시설물 관리용역(공고, 업체선정, 계약)</li> <li>• 유지관리 보존 도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도서, 품질관리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 사후평가서, 안전점검 보고서 등</li> </ul> </li> <li>• 주기적 안전점검 시행(시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li> <li>-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li> <li>-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 1회 이상)</li> <li>- 긴급점검 : 관리주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판단 시행</li> <li>-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5년 1회 이상(완공 후 10년 경과 1종 시설물)</li> </ul> </li> <li>• 점검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등</li> <li>• 하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li> <li>-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중 시특법상 시설물을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li> <li>• 시특법 제6조</li> <li>• 시특법 시행령 제6조(별표1의2)</li> </ul>



# 3<sup>장</sup>

## 사업 추진 단위업무 절차



# 1.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업무 절차

## 문화재 관련 사전 협의

(사업시행자 ⇒ 인허가 부서 ⇒ 시자치구 문화재 담당부서)

- 시행시기 : 사업 인가 전 또는 지구 지정 전
- 협의사항 : 지표조사,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대상 여부 등



## 지표조사 실시

(건설사업 시행자)

- 시 기 :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작성 시
- 대 상 : 원칙상 사업면적 3만m<sup>2</sup> 이상  
※ 예외 : 4대문안 및 3만m<sup>2</sup> 미만이라도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하는 대상
- 조사기관 :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조사기관
- 조사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 예외 : 사업면적 3만m<sup>2</sup> 미만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 자치구·시장 ⇒ 문화재청장)

- 문화재위원회 개최 : 매월 1회



## 문화재 보존조치

(문화재청장 ⇒ 시·자치구 ⇒ 사업시행자)

발굴조사 허가 신청  
(사업시행자 ⇒ 자치구 ⇒ 문화재청장·시장)

개발사업 시행  
(종료)

- 발굴조사 :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아래 경우 제외하고 불가
  -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발굴조사 허가

(문화재청장 ⇒ 시·자치구 ⇒ 사업시행자)

- 조사기관 :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전문 조사기관
- 조사비용 : 사업 시행자 부담  
※ 예외 : 단독주택 등 총면적 264m<sup>2</sup> 이하이면서 대지면적 792m<sup>2</sup> 이하인 경우 국고 지원



##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문화재청장)

※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기록보존 후 개발 가하다’고 검토되는 경우는 심의 상정하지 않음



## 발굴 완료 보고

(사업시행자 ⇒ 자치구 ⇒ 시장·문화재청장)

- 보존조치 : 원위치 원형 보존, 이전 복원, 기록 보존(발굴조사보고서 작성, 별간) 등



## 문화재위원회 개최

(문화재청장)

- 14일간 공고, 거치기간 90일



## 문화재 보존조치

(문화재청장 ⇒ 시·자치구 ⇒ 사업시행자)

- 보관·관리관청 : 국립박물관·연구소 외에 공립박물관 지정  
※ 서울시에서 출토된 국가 귀속문화재는 서울시에서 보관 관리도록 문화재청과 협의 완료(2012년)



## 발굴유물 소유자 확인 공고

(시장)



## 발굴유물 국가귀속 처리

(문화재청장)



## 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업무 절차

발주부서

심사요청  
(기술심의·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심사요청서, 설계서, 과업내용서, 방침서 등 심사자료 등록



발주부서

심사요청서 작성 제출  
(기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
  -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포함여부)  
자체시행 대상시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사유



기술심사  
담당관

용역시행 필요성 검토

-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상위계획,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검토
- 설계단계별 용역 필요성 등 검토
-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유사용역 사례 및 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기술심사  
담당관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 설계 요율 적정 여부
- 제경비 등 적용기준 적정 여부
-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 추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기술심사  
담당관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요청부서, 예산 및  
계약부서 (기술심의·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 심사결과서 등록
  - 적 정 : 기술용역 시행이 타당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타당하나 자체시행(부분포함),  
과업항목 및 물량조정, 개략공사비 및 요율조정,  
단가조정, 기존자료 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서류  
미비 등으로 재심사
  - 부적정 : 기술용역시행의 타당성 결여로 자체설계 등으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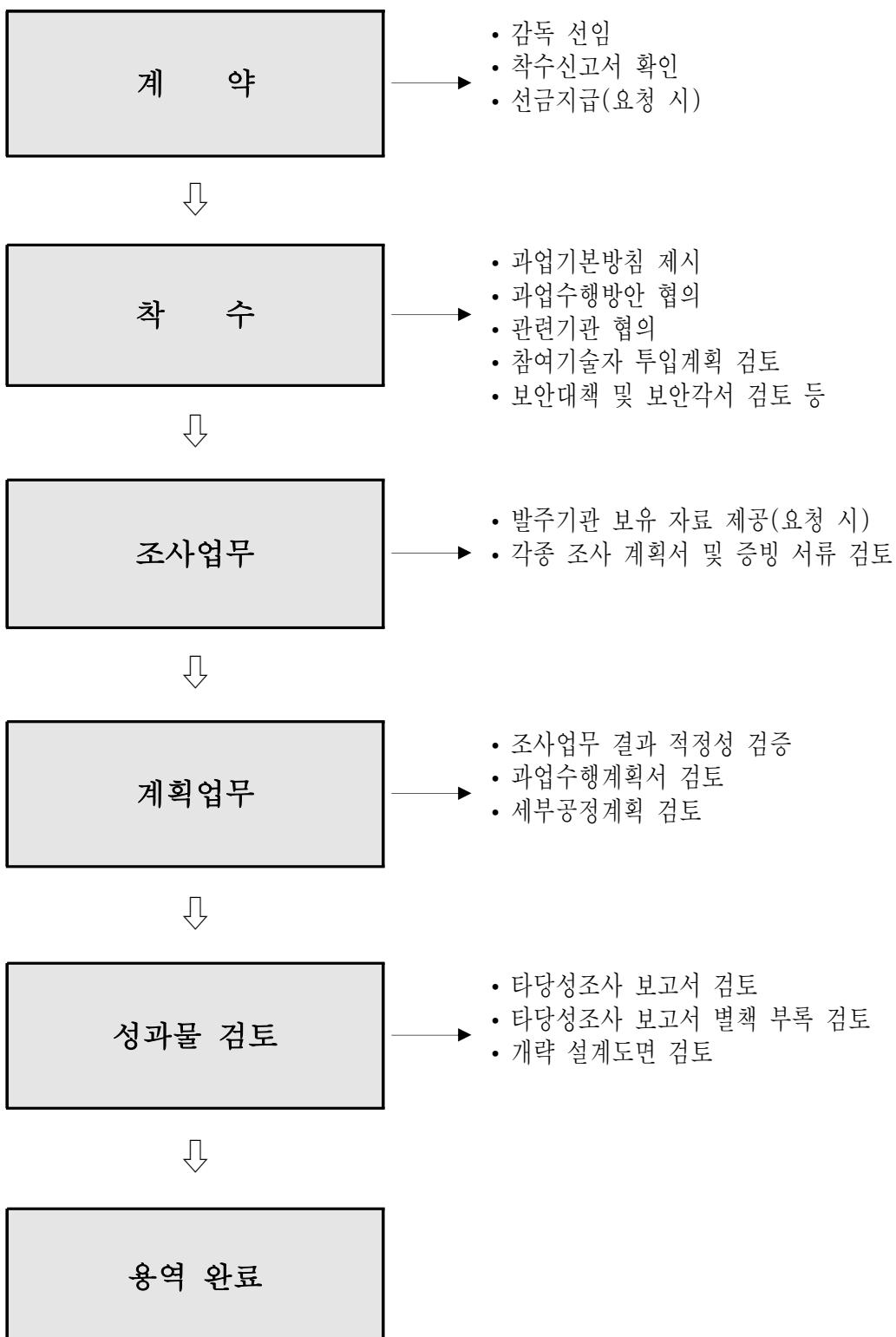


발주부서

사후관리 입력  
(기술심의·용역관리 시스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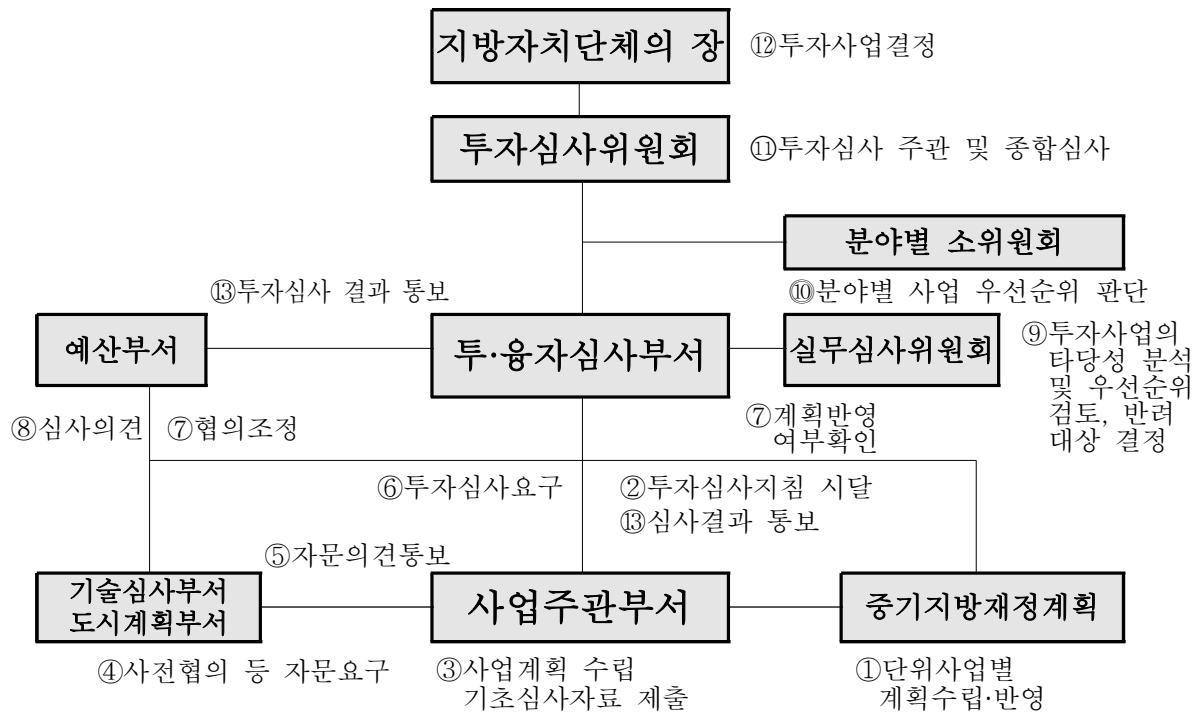
- 입력사항 : 최종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용역발주전 사후관리 입력)

### 3. 타당성조사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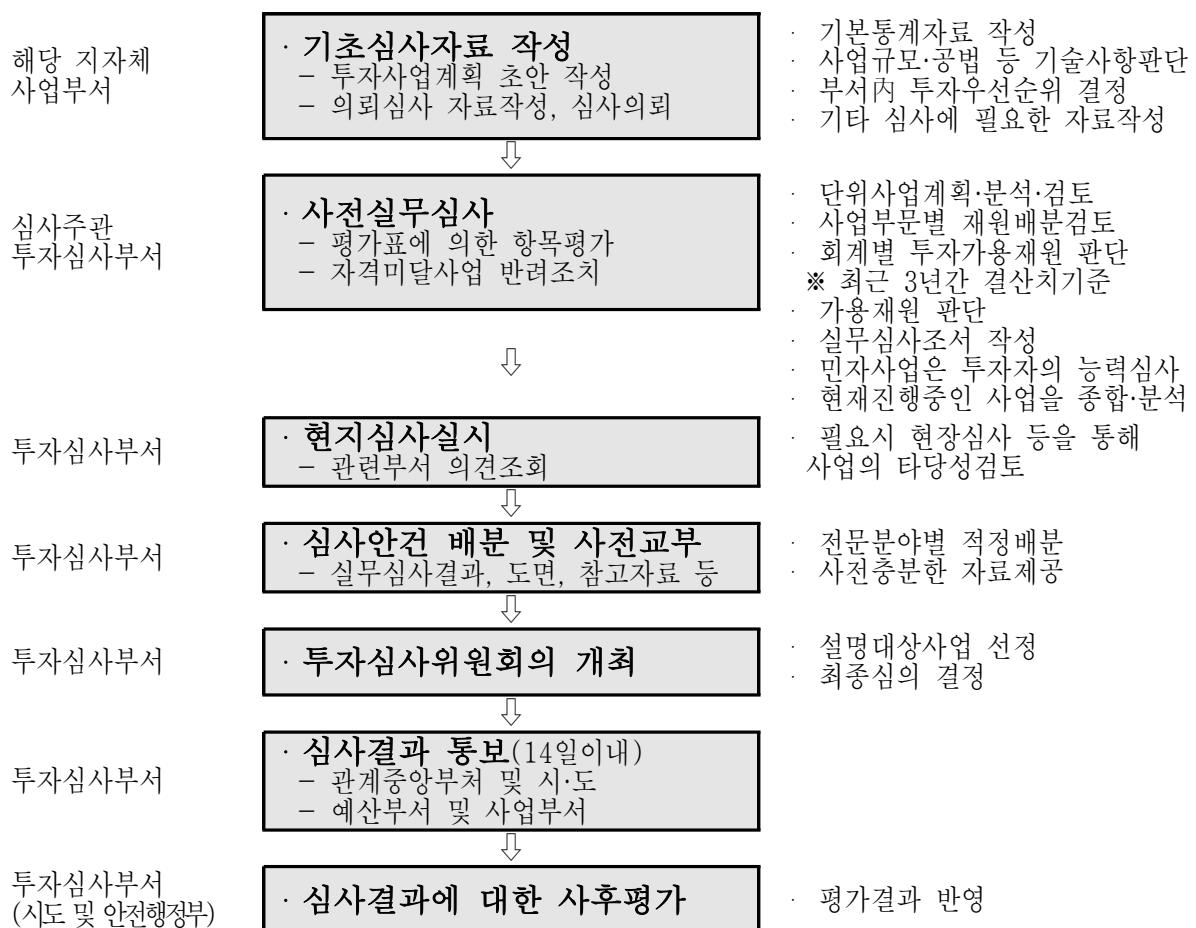


## 4. 투자심사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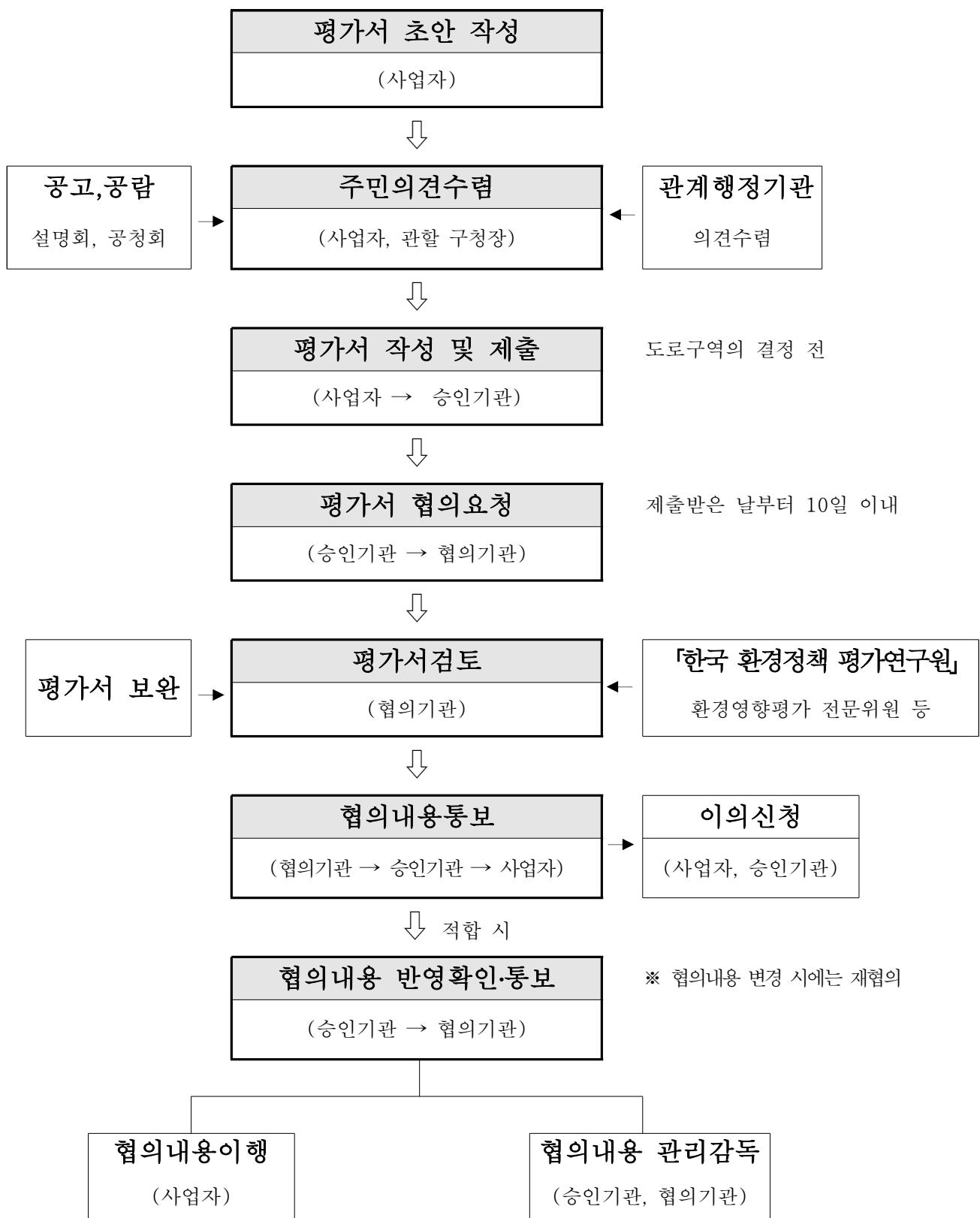
###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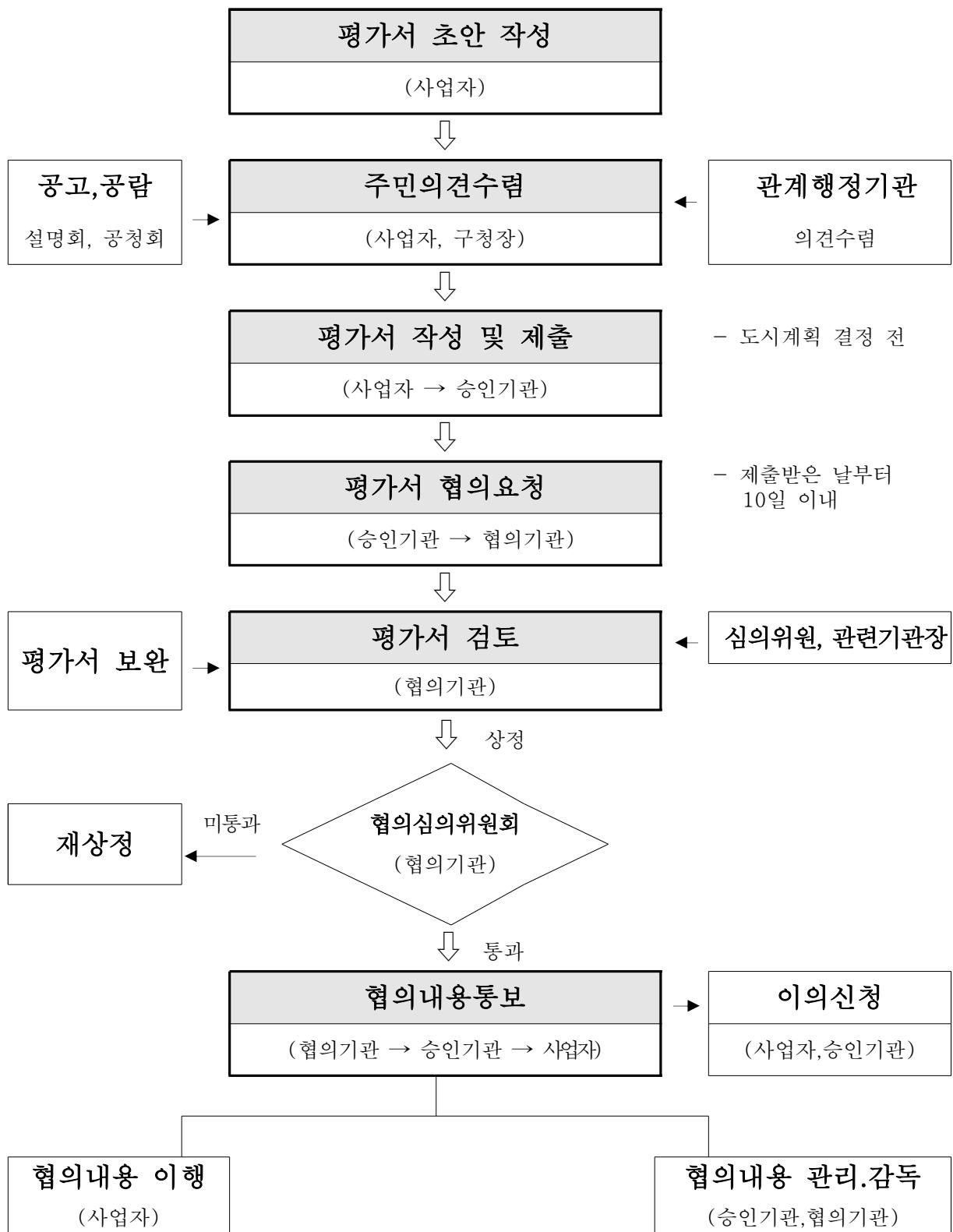
### <단계별 업무 처리사항>



## 5. 환경영향평가 업무 절차



## 6. 교통영향분석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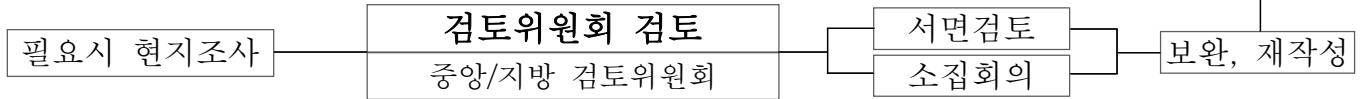


##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 절차

<b>협의서류 제출</b>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b>협의 요청</b>
관계행정기관→중앙/지역본부

<b>접수 및 기본여건 검토</b>
중앙/지역본부(방재부서)



<b>협의의견 작성</b>
중앙/지역본부

<b>협의의견 통보</b>
중앙/지역본부(방재부서) →요청기관(관계부서)

<b>조치결과 또는 계획접수</b>
관계행정기관(관계부서) →중앙/지역본부

<b>조치결과 또는 계획확인</b>
중앙/지방 검토위원

<b>착공전 이행계획서 접수</b>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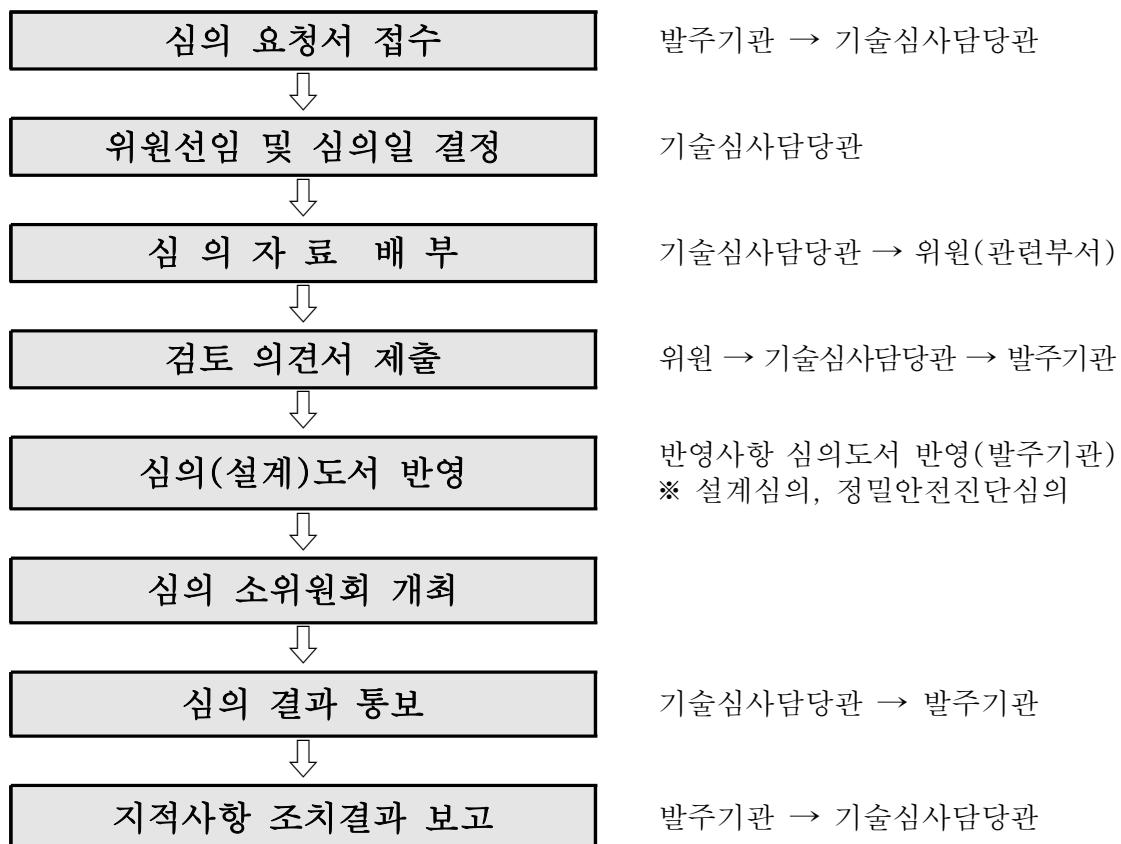
<b>이행실태점검</b>
중앙/지역본부

지적사항조치/공사중지요청
중앙/지역본부→관계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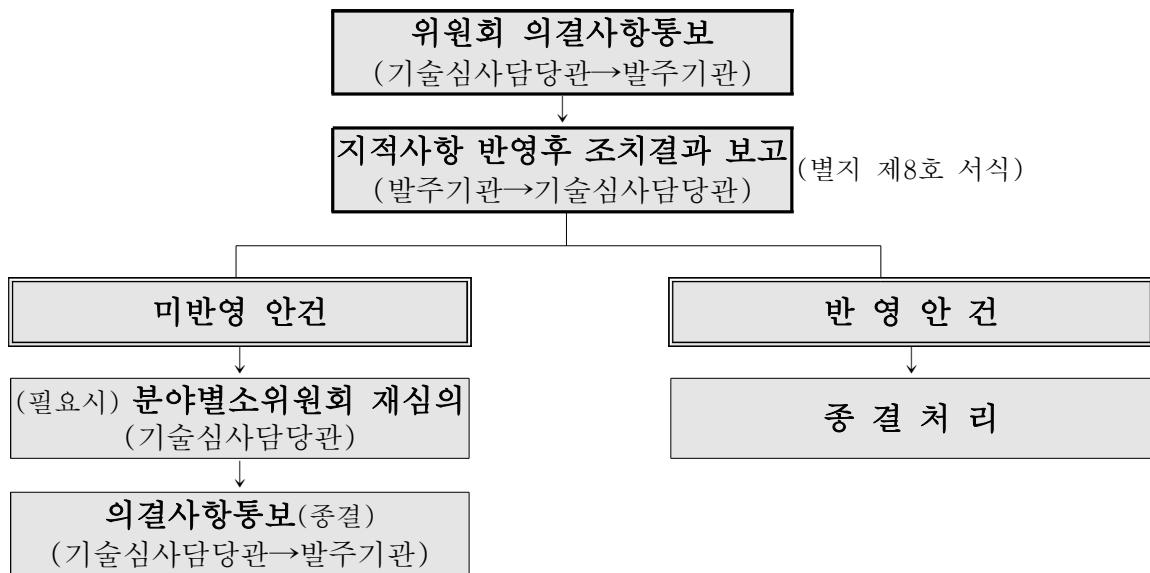
<b>사업준공</b>
관계행정기관

## 8. 설계심의 업무 절차

### ○ 심의(표준) 절차(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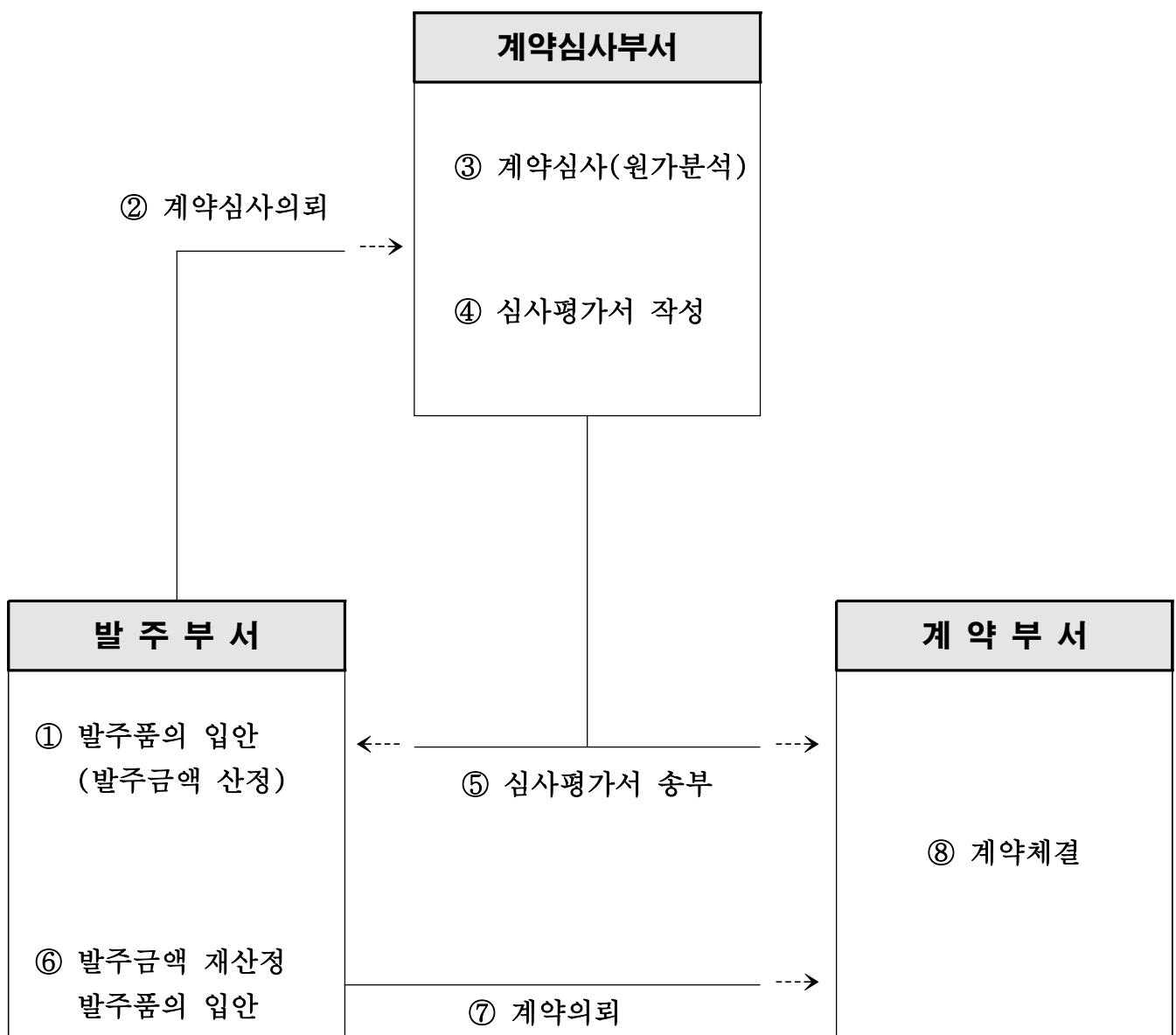
### ○ 심의(표준) 절차(②) (심의지적사항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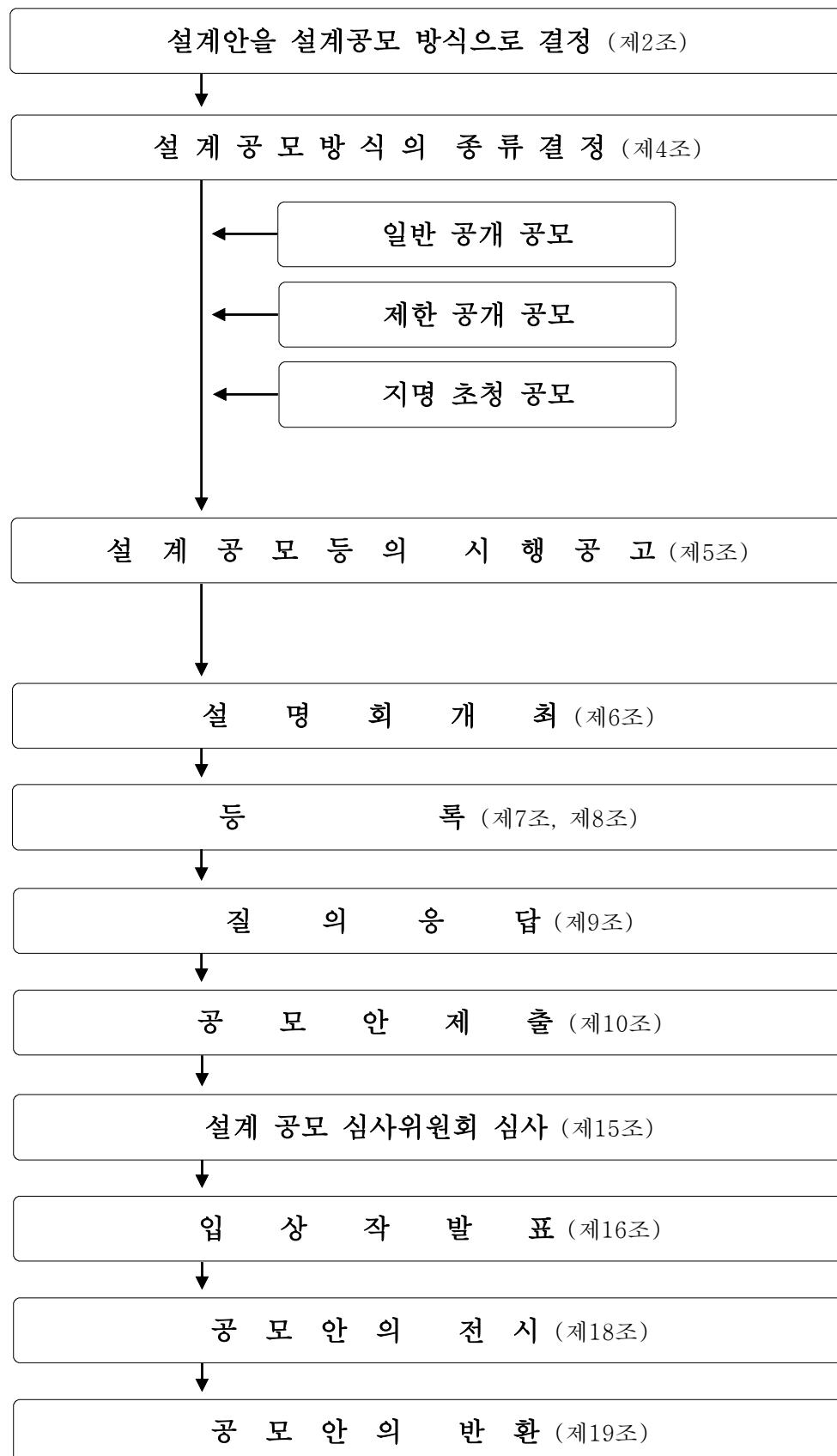
※ 조치내용 보고기한

- 설계심의(설계용역 준공전)
- 정밀안전진단심의(용역 준공전)
- 입찰안내서심의(조달청 의뢰전)
- 용역발주심의(용역발주전)

## 9. 계약심사 업무 절차



## 10. 설계공모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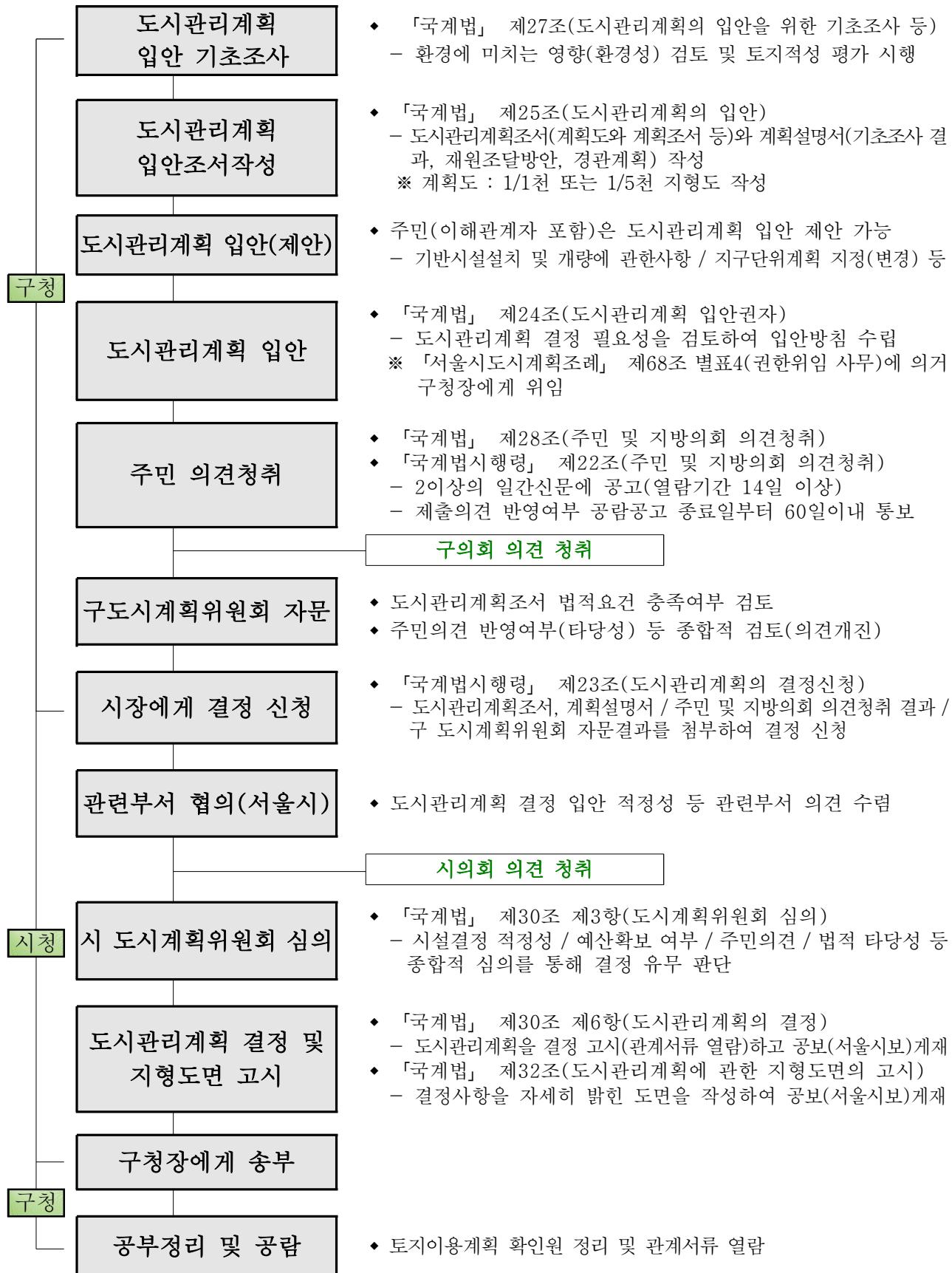
\* 자세한 설계공모 운영방법은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을 참조

#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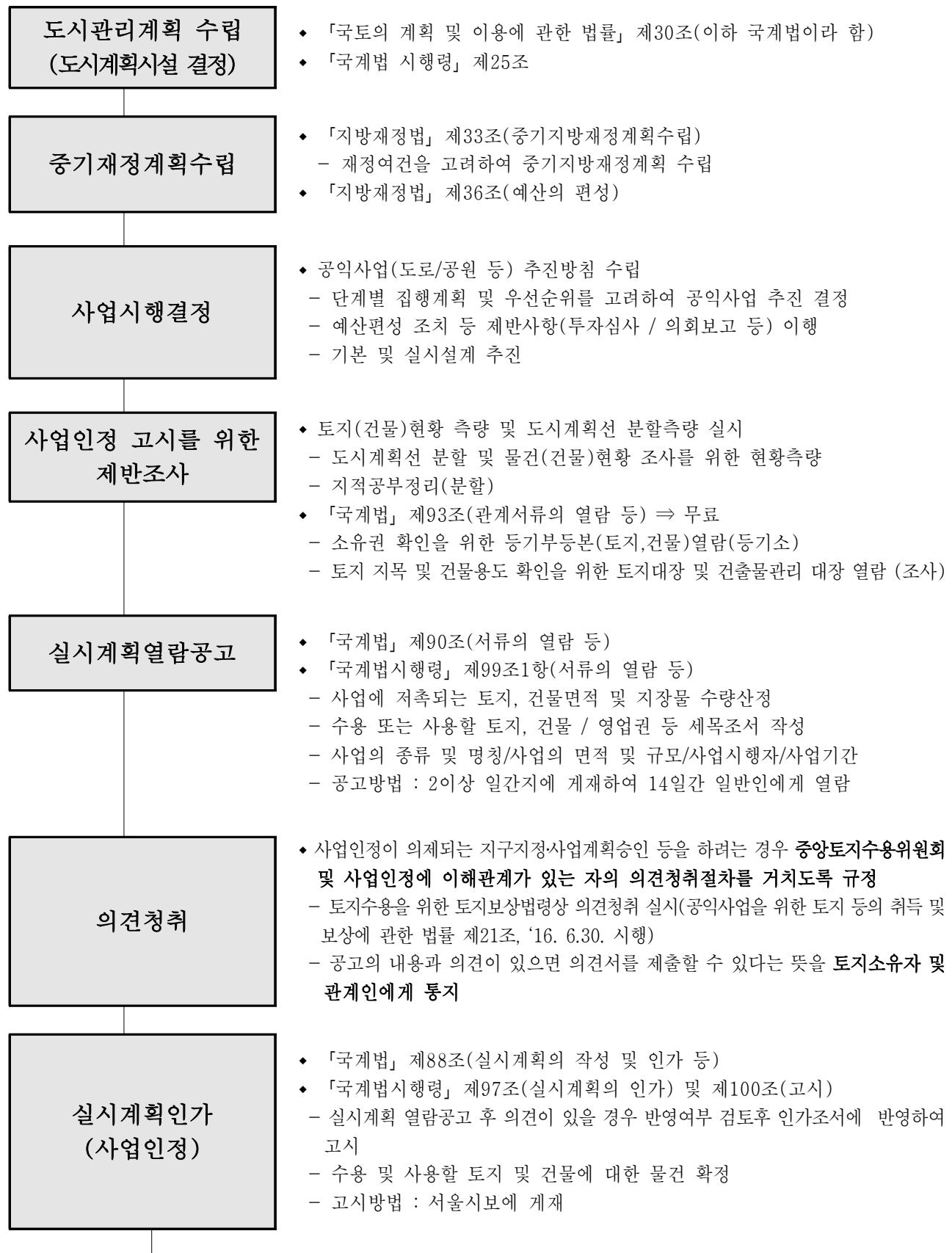
## 주요 행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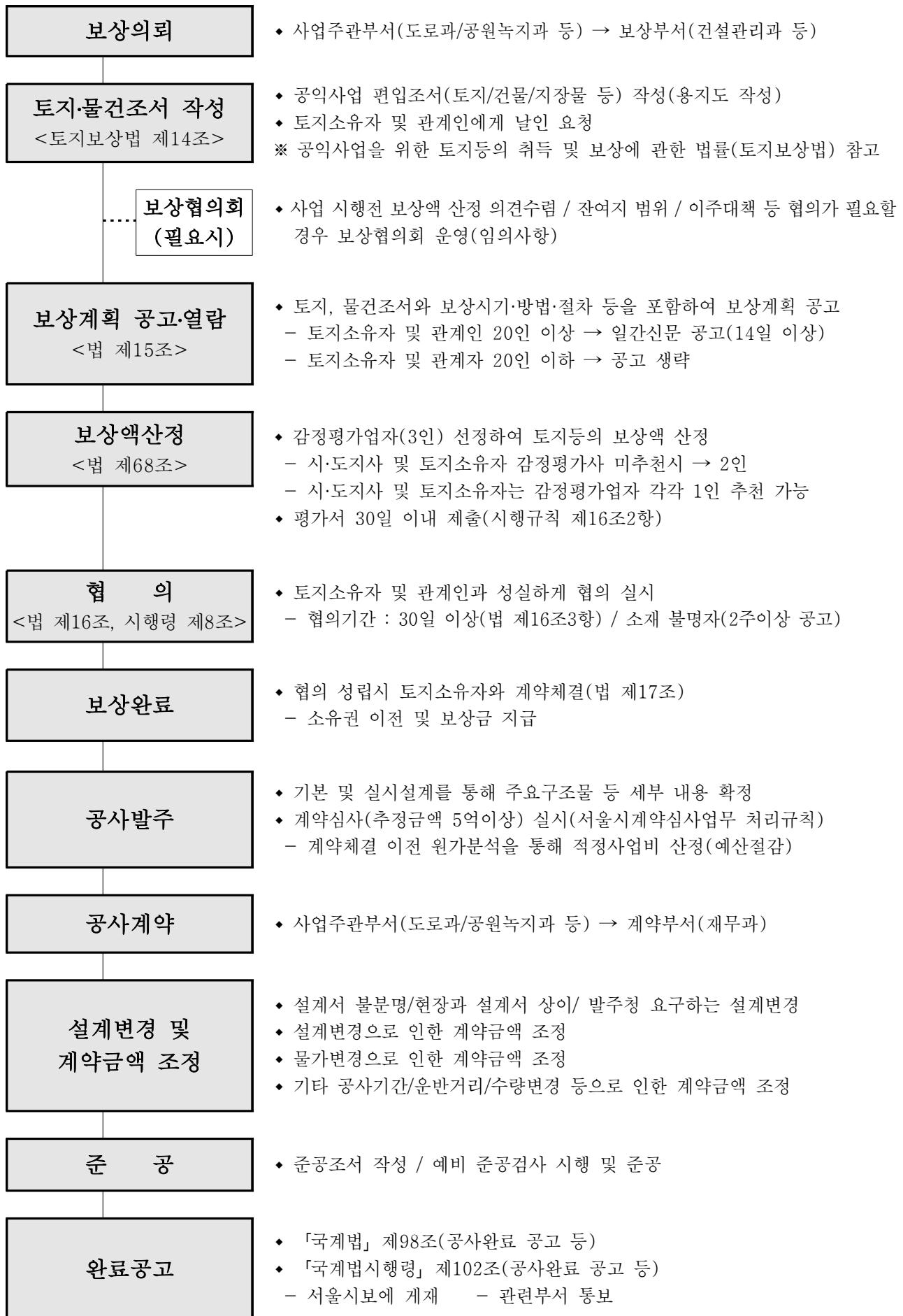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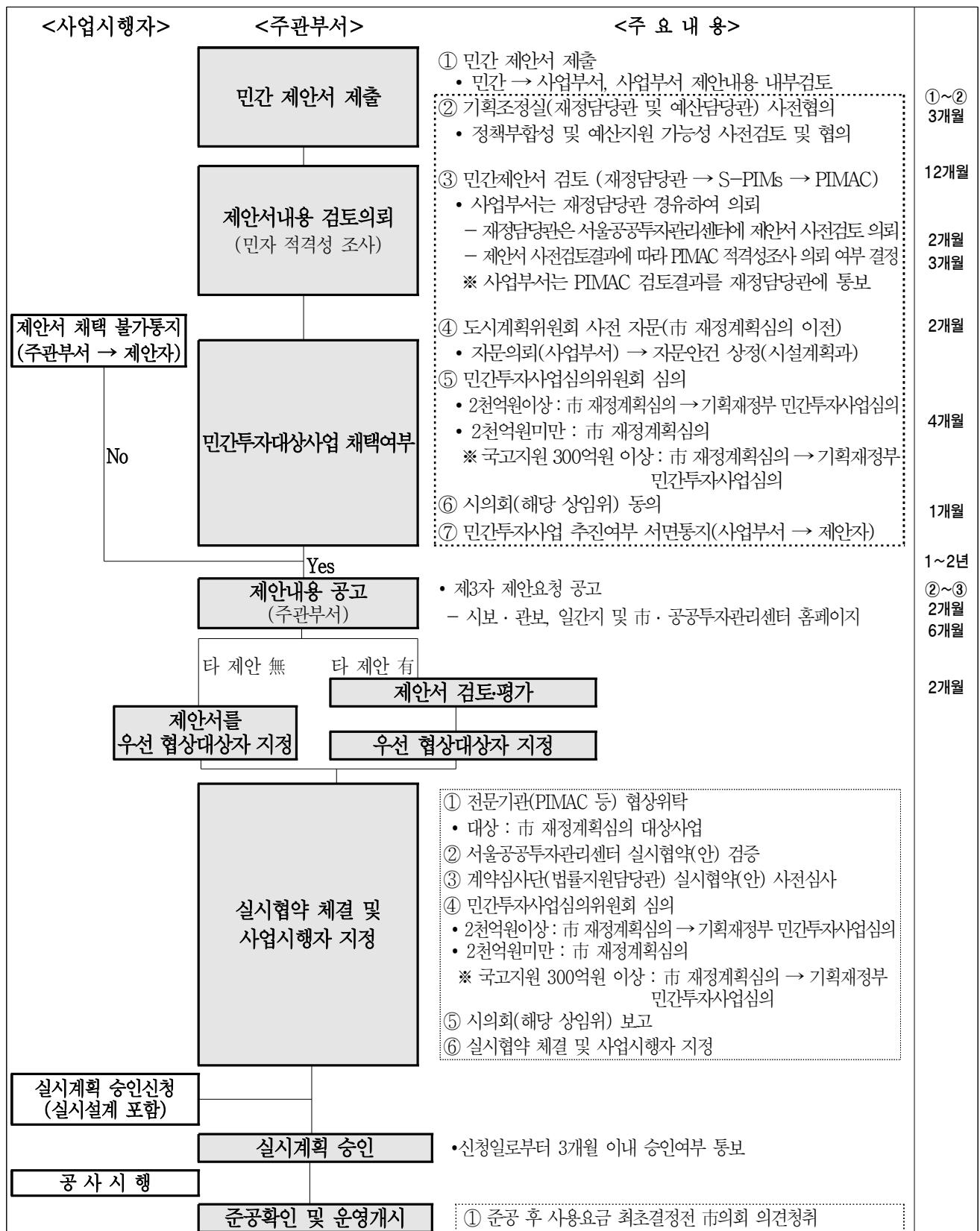
## 2. 도시계획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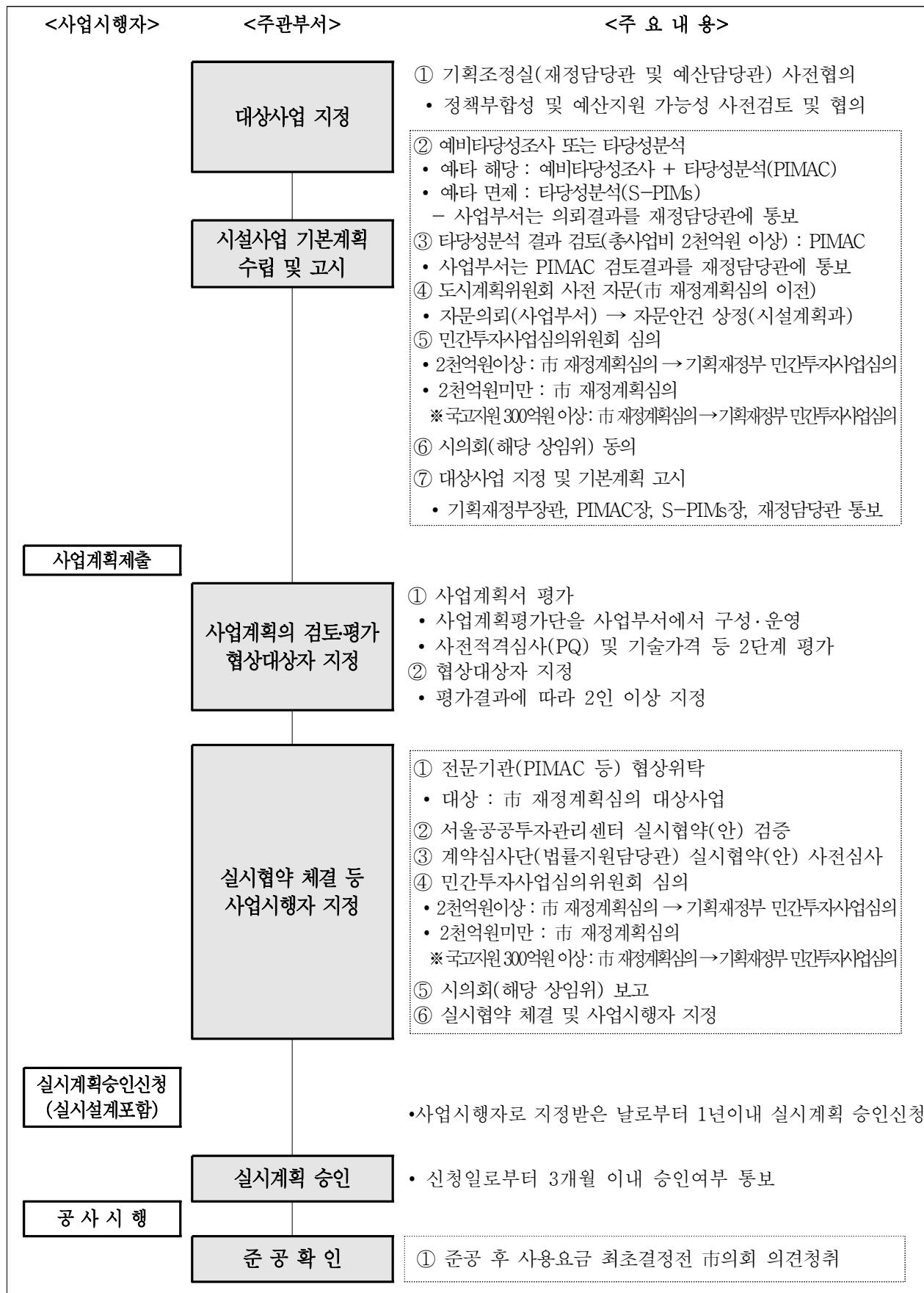


### 3.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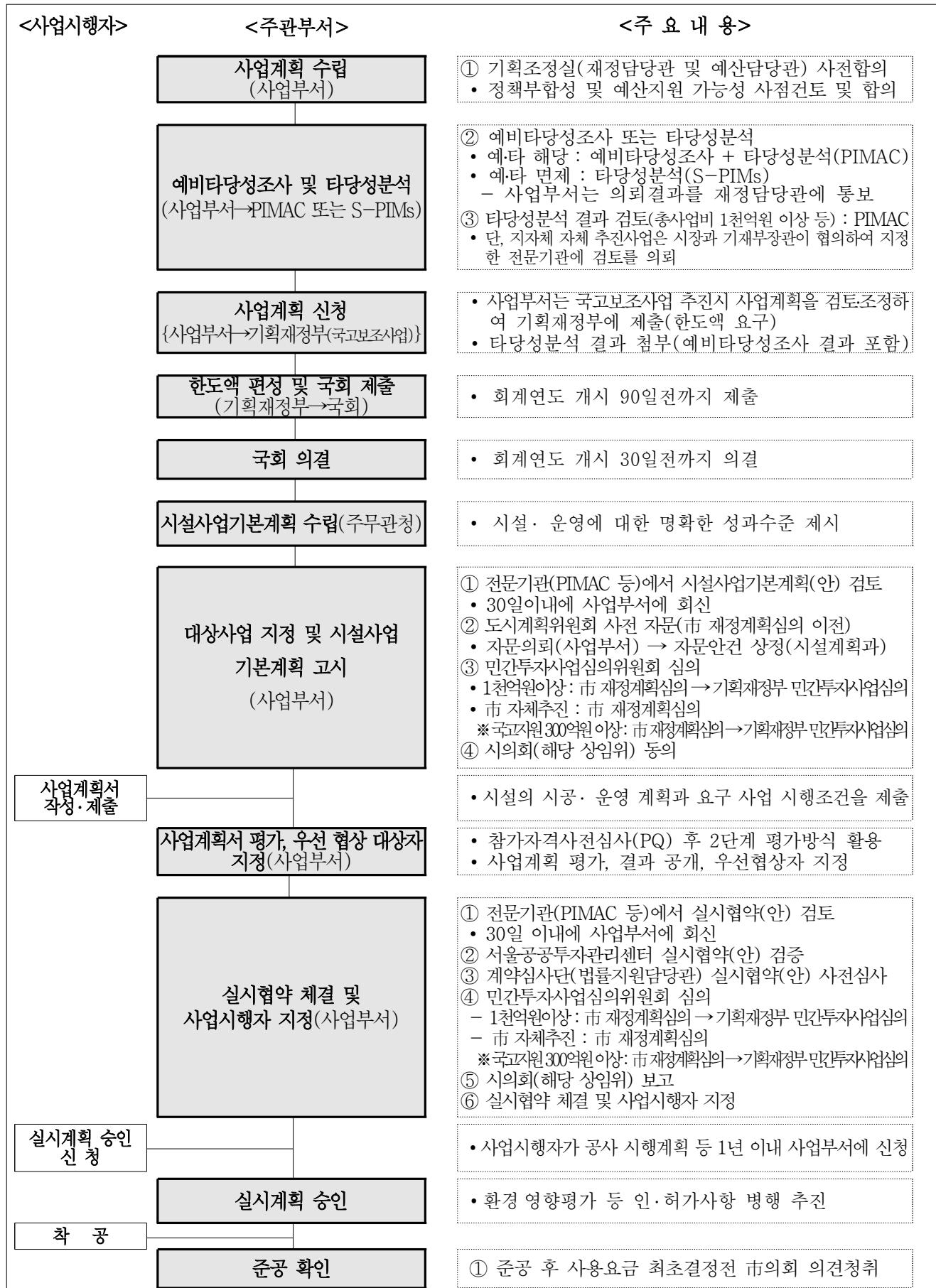
#### 1. 수의형(BTO 등) 민간투자사업 – 민간제안



## 2. 수의형(BTO 등) 민간투자사업 - 市 고시사업



### 3.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 市 고시사업



## 4. 민간투자법 미적용 사업 추진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추진절차 >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추진방식 및 적용법률 검토·협의  
(사업부서↔재정담당관)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사업부서→재정담당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사업부서→시설계획과)



공유재산심의 및 재정계획심의  
(사업부서→자산관리과 및 재정담당관)



시의회 동의



고시 및 공고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비교·평가  
(사업부서)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사업부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계약심사단(법률지원담당관)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공 후 사용료 최초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 공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의한 추진절차 >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사업부서)



추진방식 및 적용법률 검토·협의  
(사업부서↔재정담당관)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사업부서→재정담당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사업부서→시설계획과)



시 재정계획심의  
(사업부서→재정담당관)



시의회 동의



고시 및 공고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비교·평가  
(사업부서)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사업부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계약심사단(법률지원담당관)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시의회(해당 상임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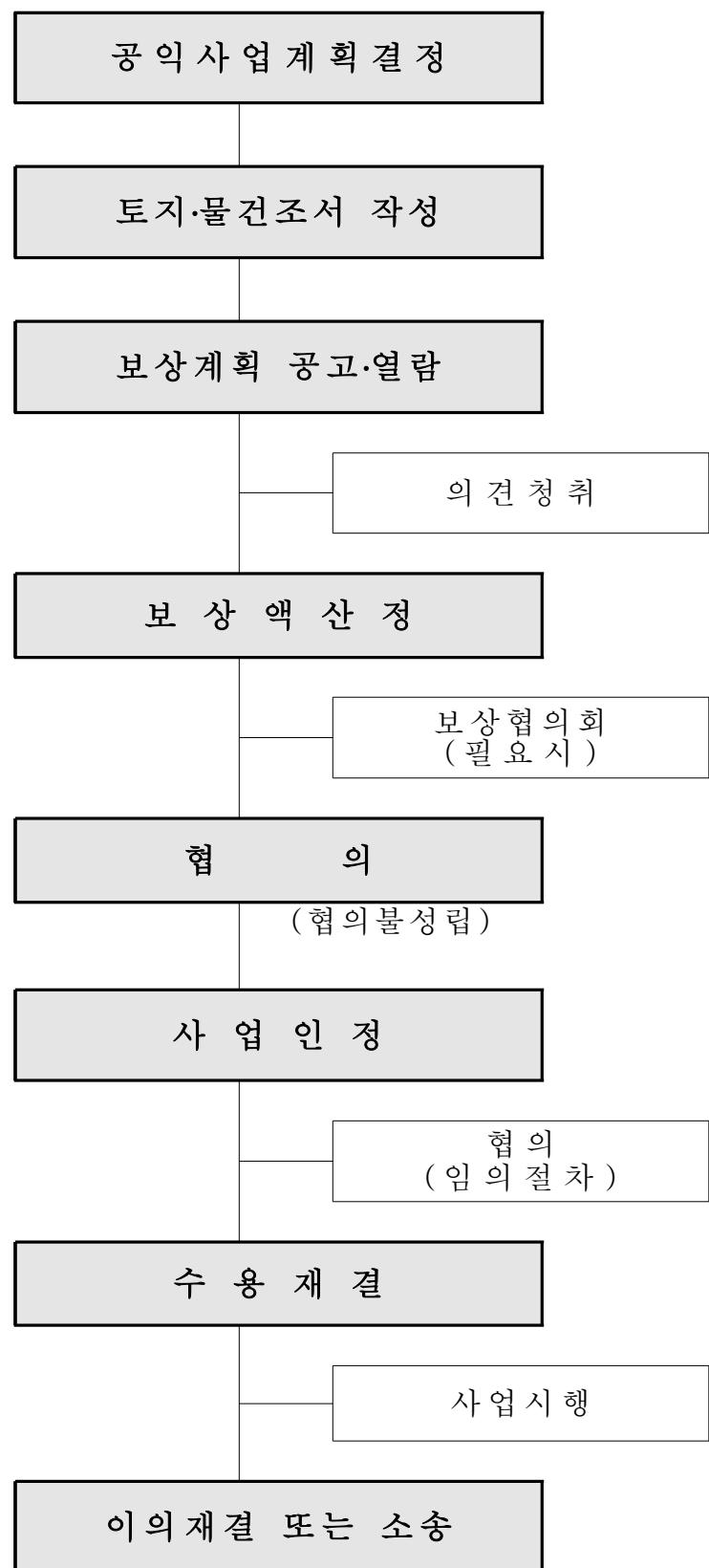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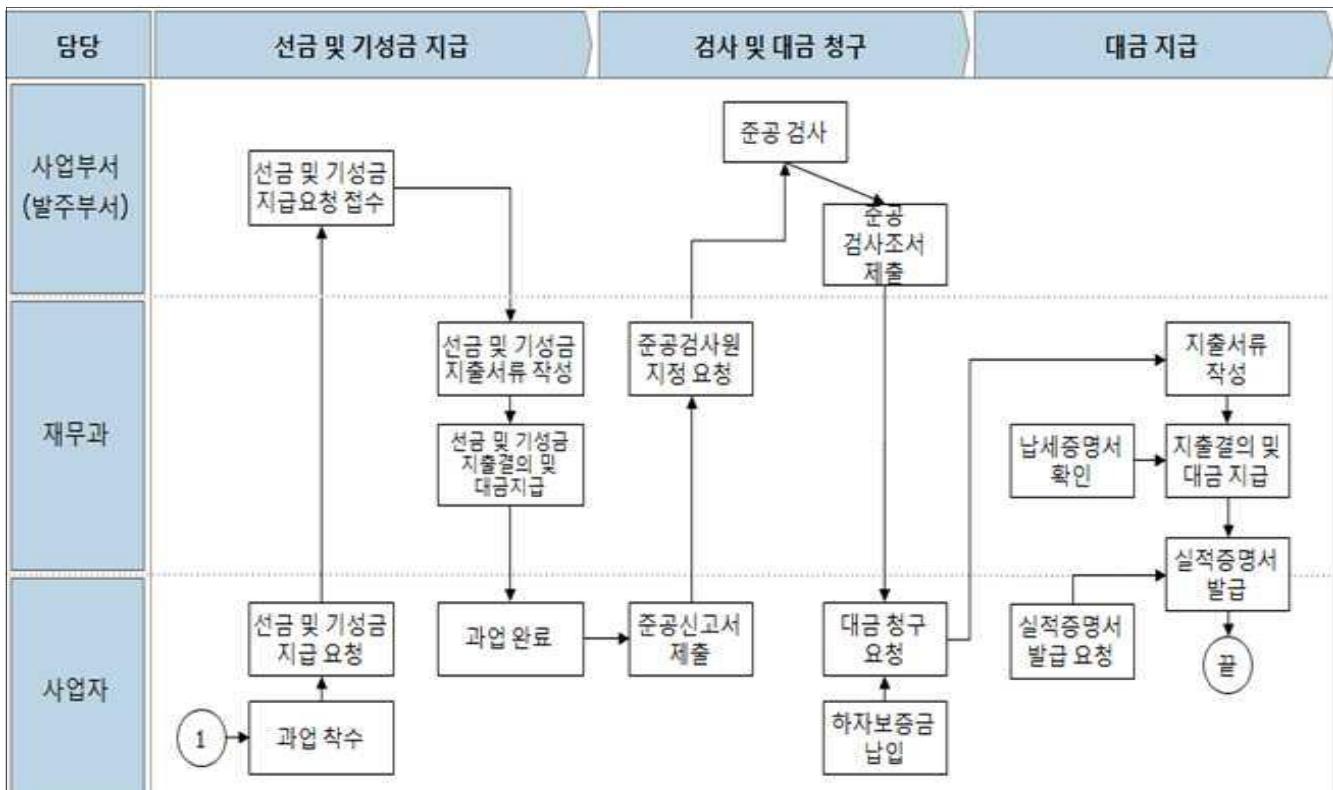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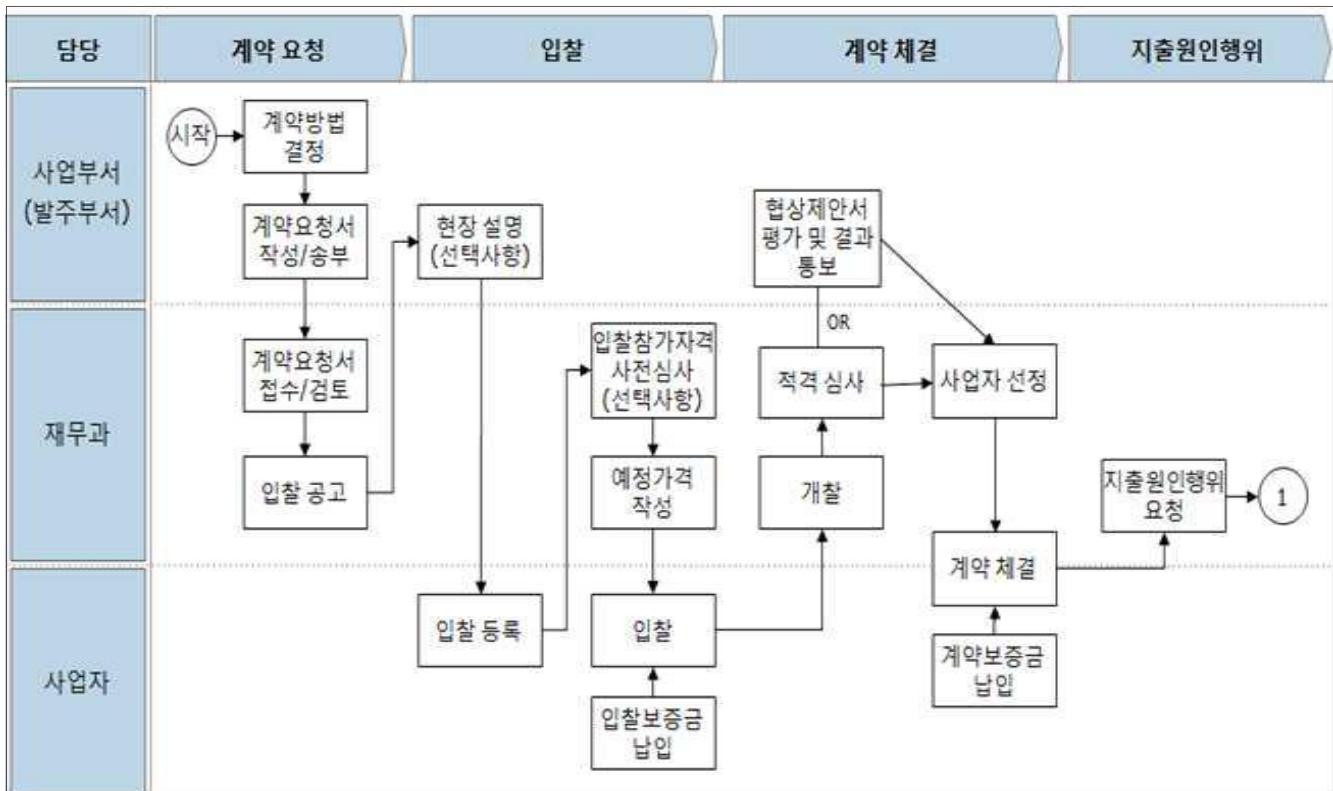


준공 후 사용료 최초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 4. 토지취득 및 보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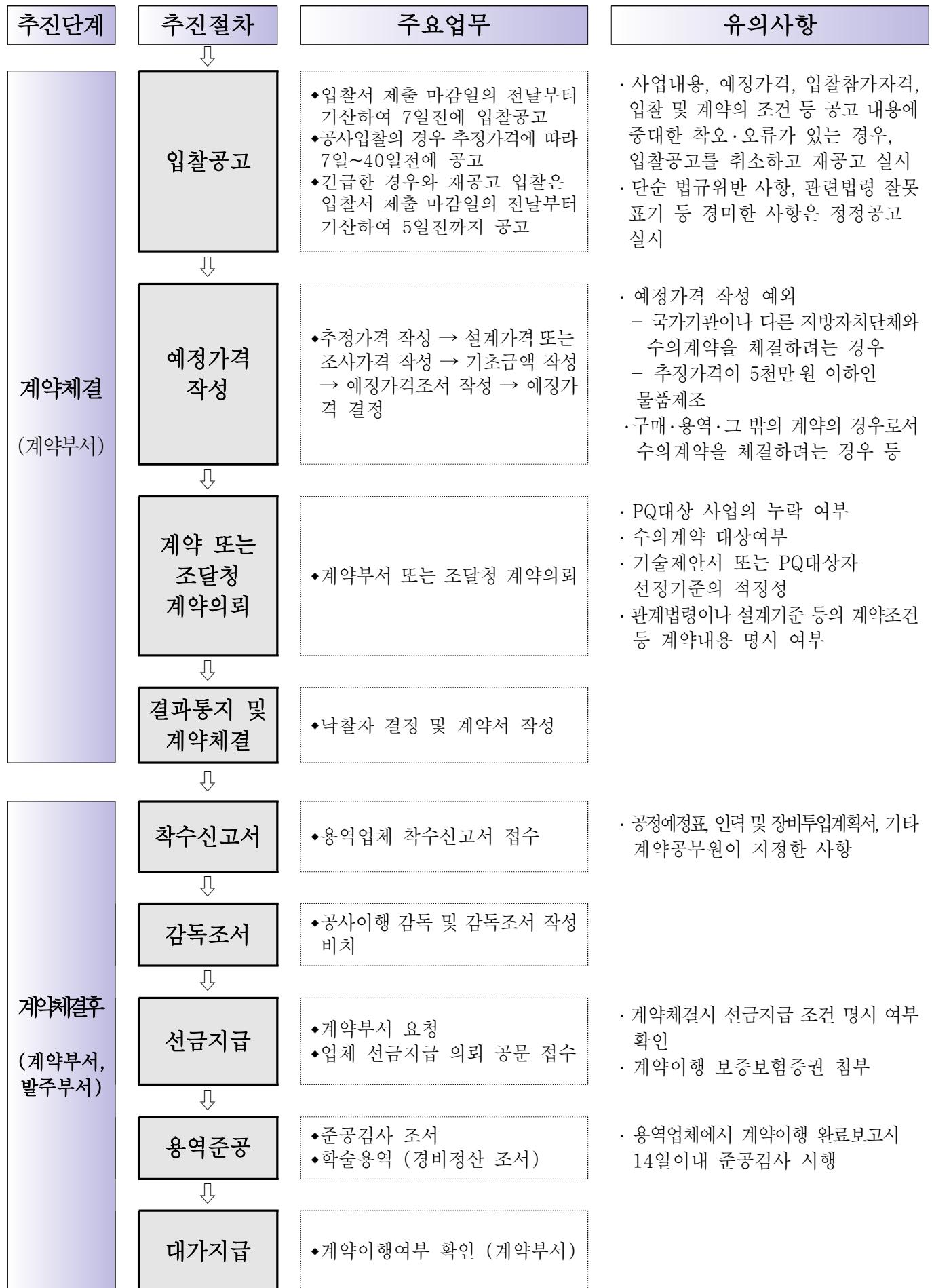


## 5. 계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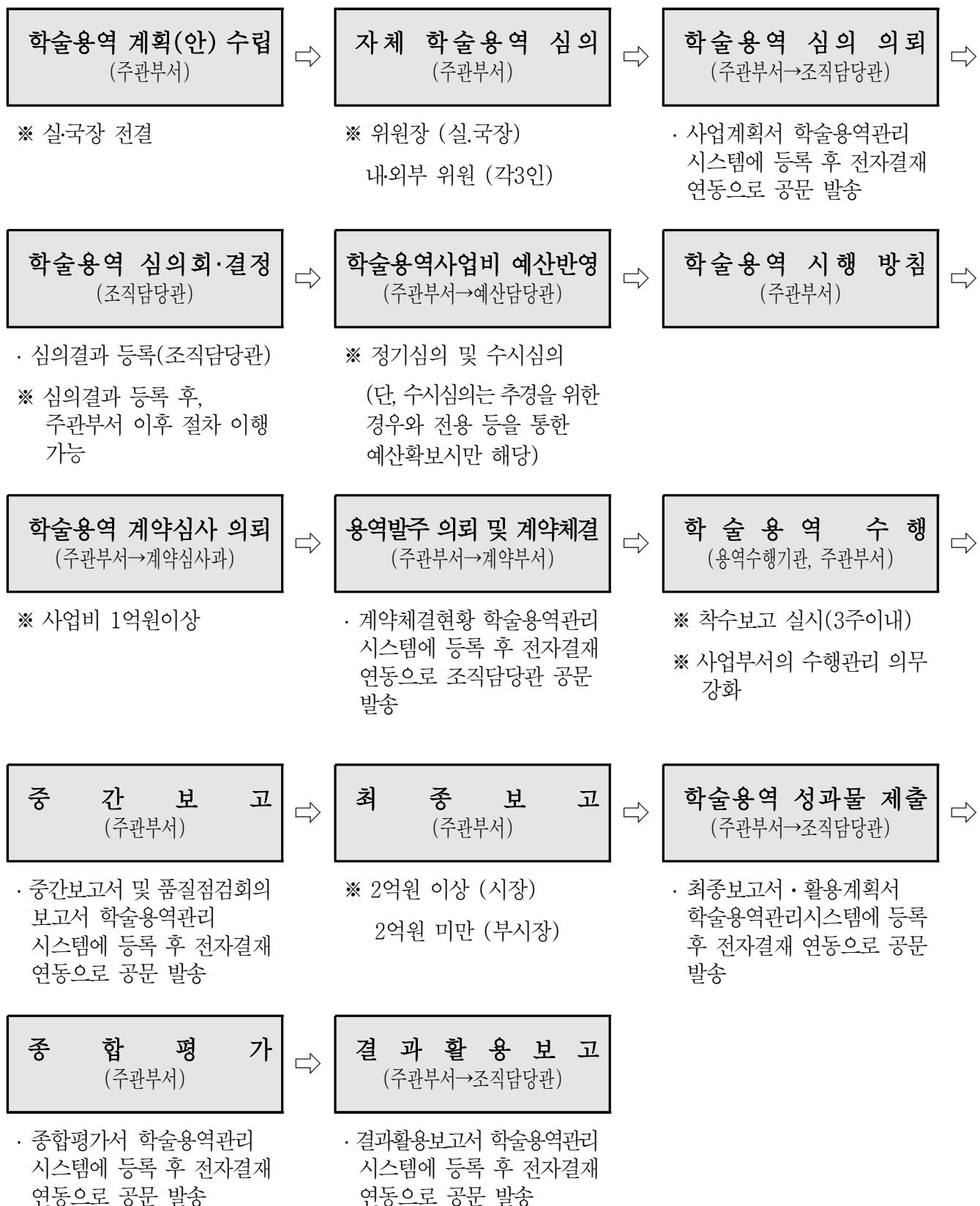


## 6. 용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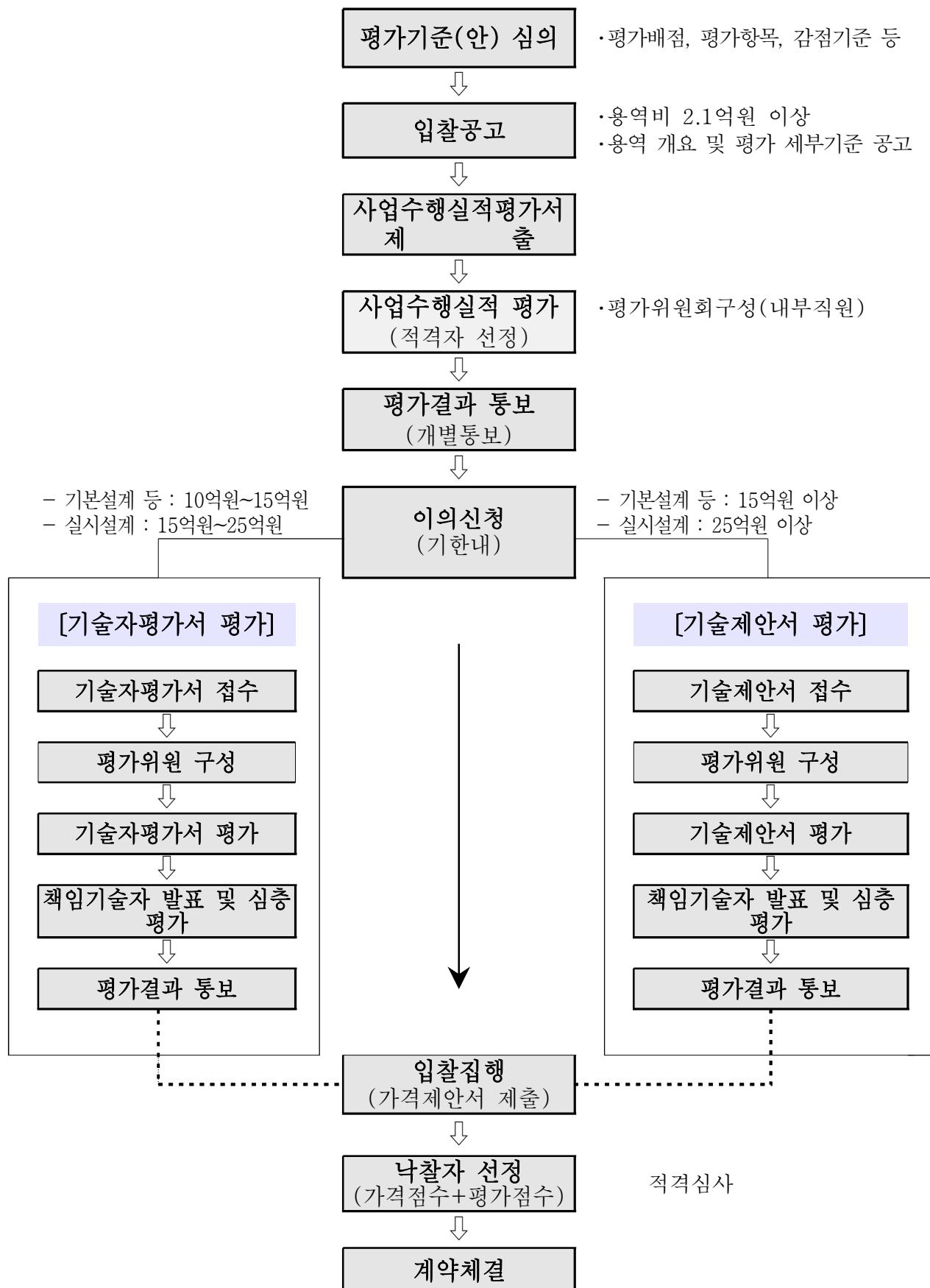
추진단계	추진절차	주요 검토내용	유의사항
계약의뢰 (발주부서)	사업기본 계획서 작성 (공통)	•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 불필요한 용역의 추진여부 • 용역의 중복여부 (부서간 사전협의 등 정보 공유)
	과업내용서 작성 (공통)	• 사업목적, 사업기간, 과업내용 등 용역업체에서 수행할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학술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발주 여부 • 목적달성을 위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명확하고 빠짐없이 제시하였는지 여부 • 관계법령, 설계기준, 제약조건 등 계약내용 명시 여부
	원가계산서 작성 (공통)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 세출예산집행지침 • 표준품셈, 일위대가표, 물가정보지, 정부노임단가, 국내여비 규정 등	• 용역대가의 적용이 관련규정에 적용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
	제안요청서 (해당여부 확인)	•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유의사항 기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 행정절차 이행 - 학술용역심의회,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계약특수조건 (해당여부 확인)	• 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선량한 풍속, 기타 신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	
	예산배정· 계약 관련 규정 확인	• 예산배정여부 확인 • 계약관련 규정 검토	• 일상감사 이행(3천만원 이상 용역) • 계약방법, 계약절차, 첨부서류 등 계약관련 각종 규정 검토
	시행문 작성 (공통)	•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 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 계약의뢰 전 작성한 서류(사업계 획서 등) 첨부	• 수의계약(업체선정 등) 시 사유기재(시행문 또는 집행계획서)



## 7. 학술용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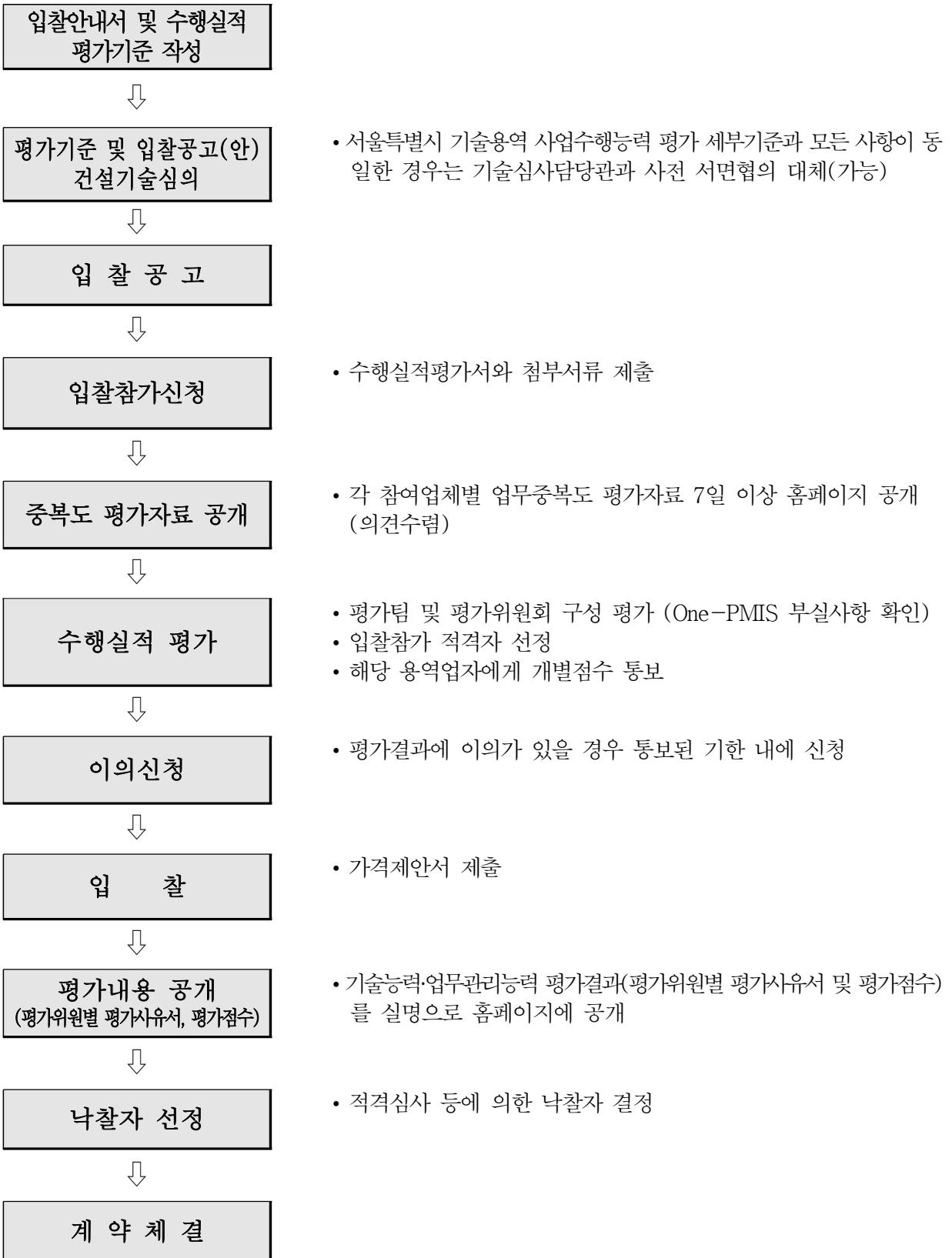
## 8.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



# [가] [ ]

##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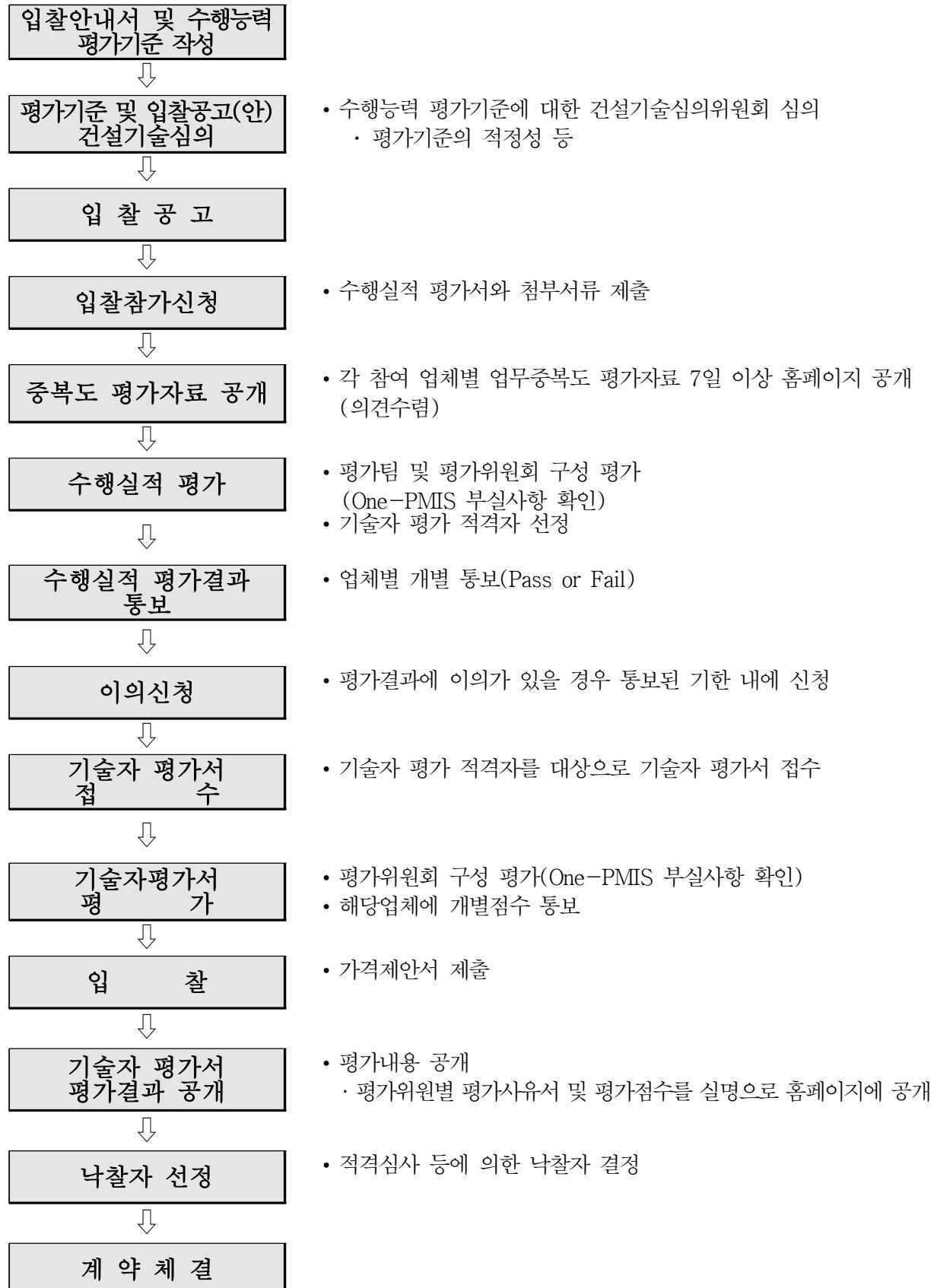
## 【주요 내용】



# [ .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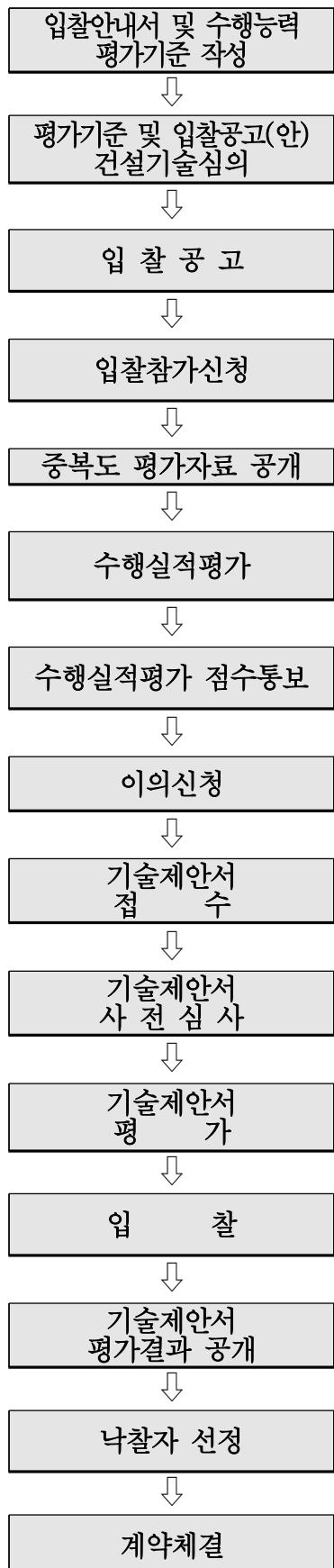
## 【업무 흐름】

## 【주요 내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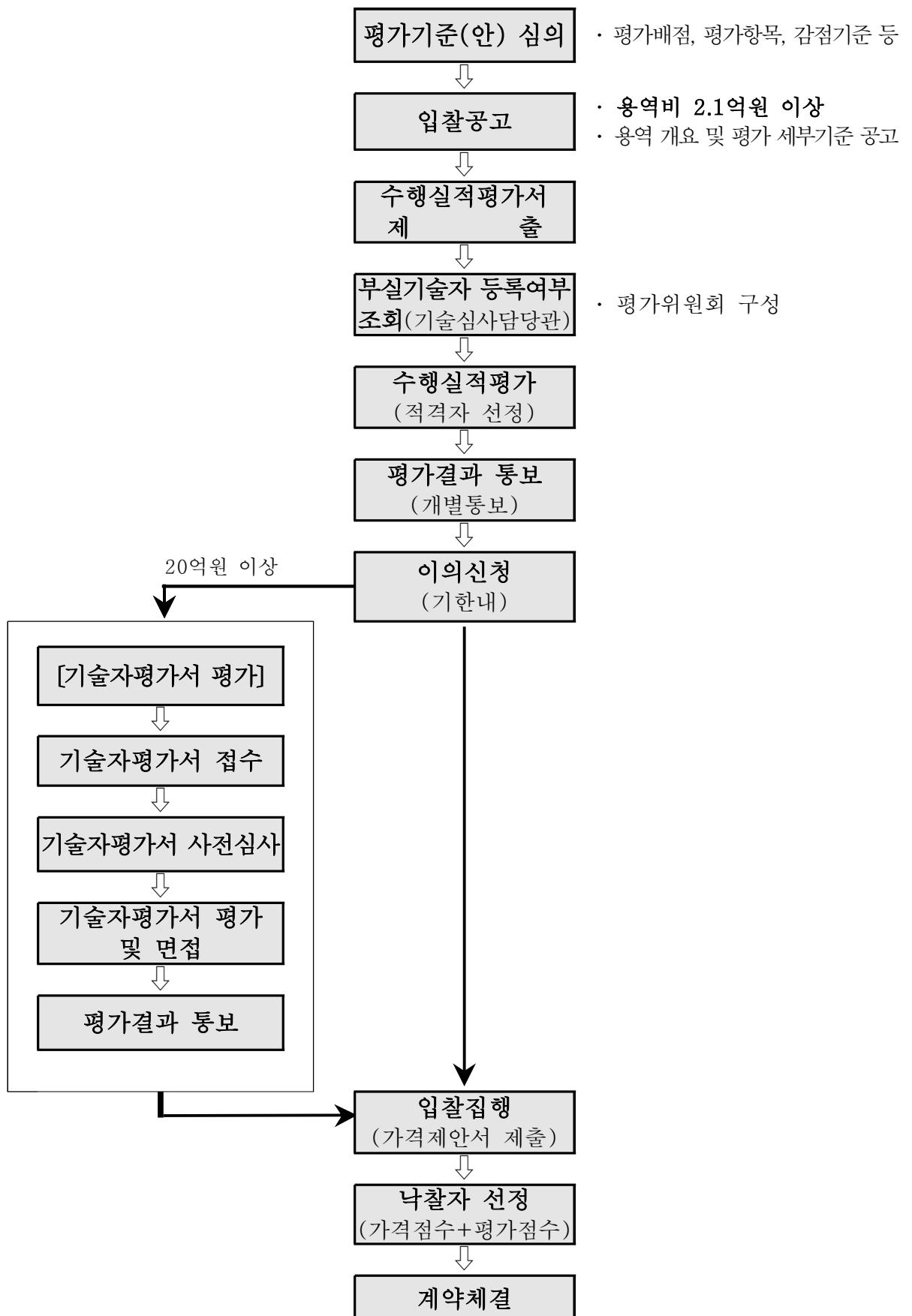
**【업무 흐름】**



**【주요 내용】**

- 수행능력(수행실적+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기준 적정여부 등
-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7일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견수렴)
-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Pass or Fail)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 기술제안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접수
- 위반여부를 발주부서가 사전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One-PMIS 부실사항 확인)
  - 업체별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 가격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위원별 평가사유서·평가점수를 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9.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절차



# [가. ]

## 【업무 흐름】

## 【주요 내용】

입찰안내서 및 수행실적 평가기준 작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건설기술심의



입찰공고



입찰참가 신청



부실기술자 등록여부 조회



수행실적평가



이의신청



입찰



평가내용 공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과 모든 시항이 동일한 경우는 기술심사담당관과 사전 서면협의 대체(가능)

-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에 등록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 평가팀 및 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 통보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내에 신청

- 가격제안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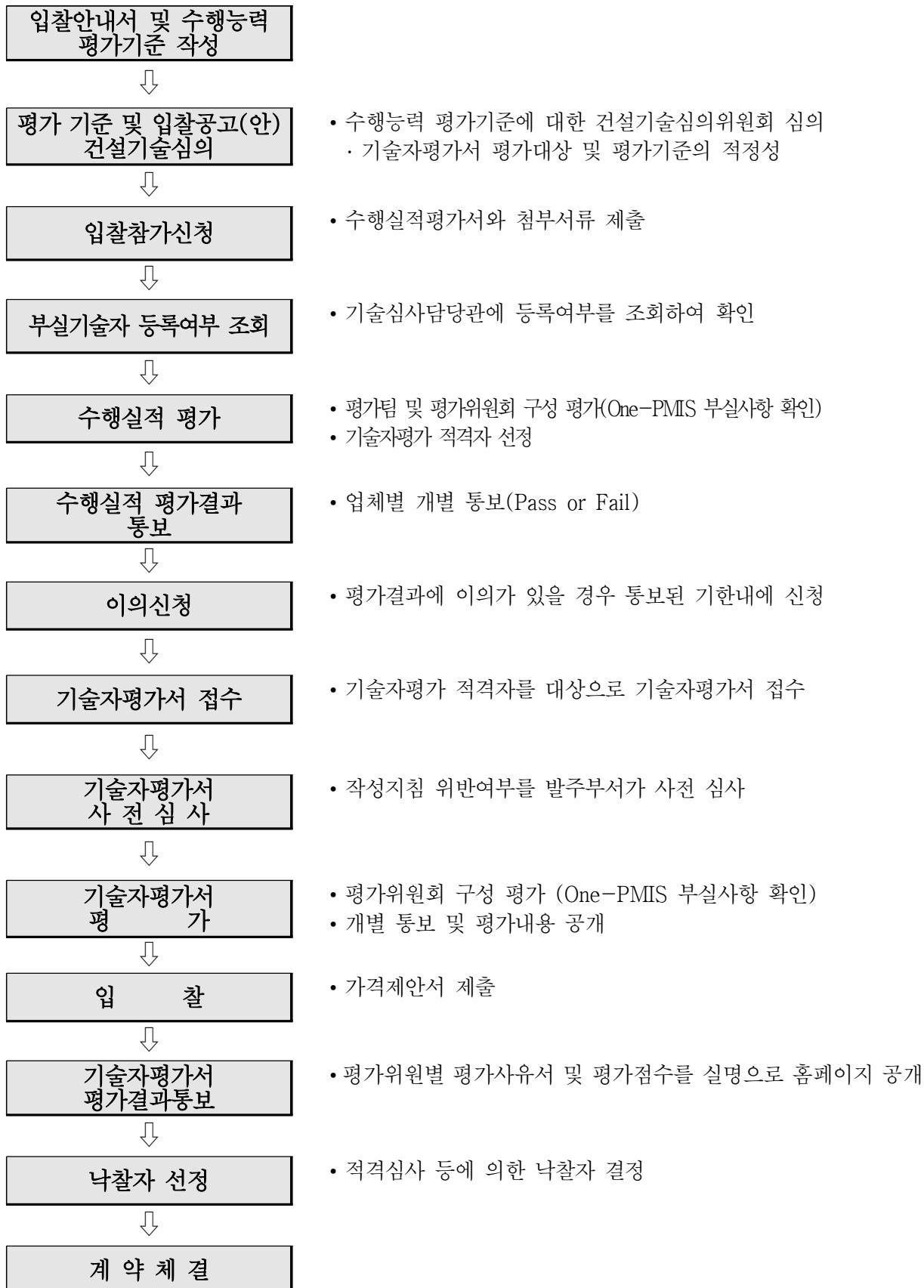
-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발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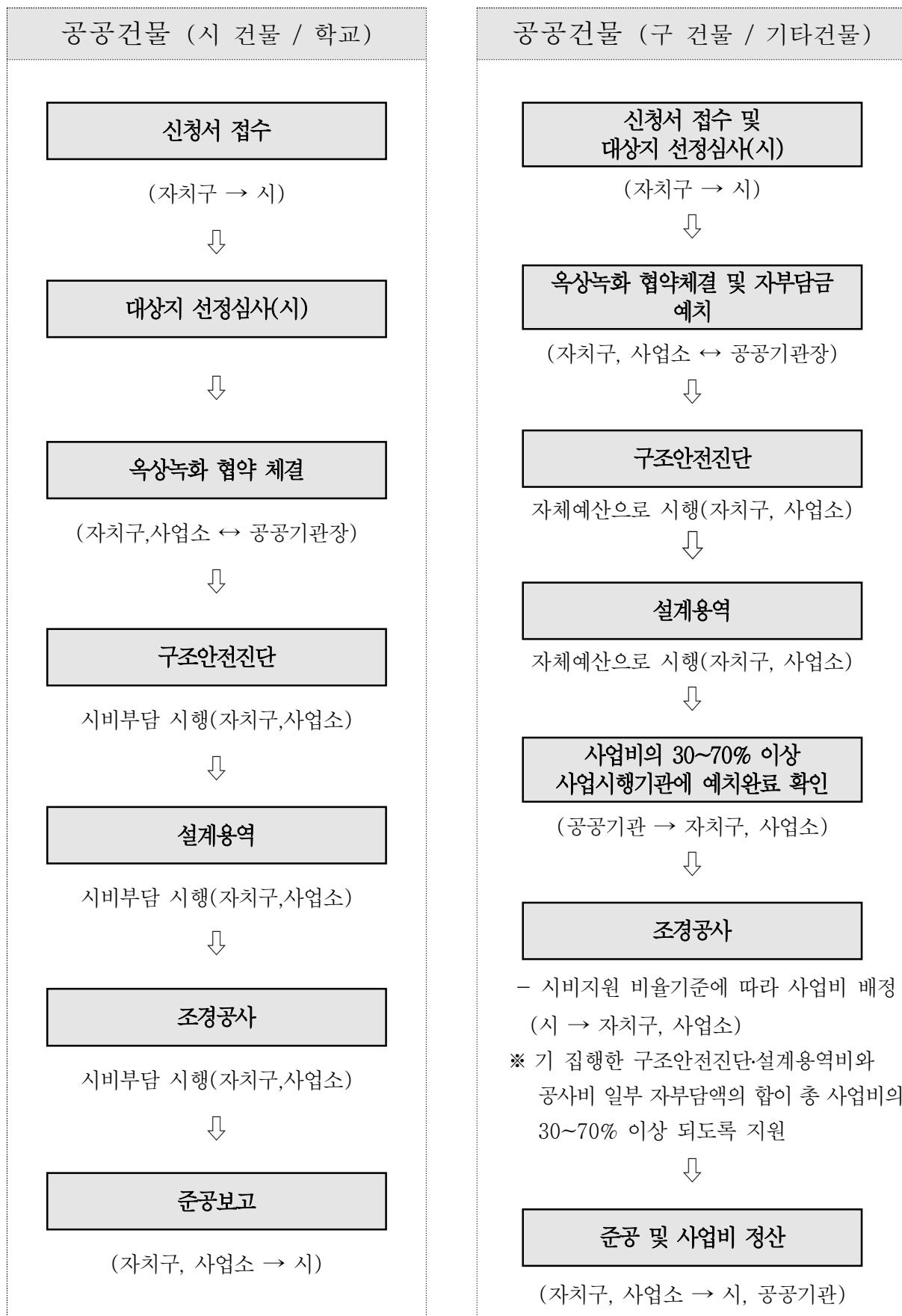
# [ . ] 가 가 [ ]

## 【업무 흐름】

## 【주요 내용】



## 10. 옥상녹화 추진 절차



민 간 건 물	자치구 주의사항
<b>신청서 작성 및 제출</b> (건축주 → 자치구) 	
<b>현장 및 건축주 의견 조사</b>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및 건축주 의견 조사 실시</li> <li>- 건축주에게 사업목적, 추진절차, 협약내용,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li> </ul> <p>※ 교수,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p>
<b>지원대상지 선정</b> 선정위원회(시) 	
<b>구조안전진단</b> 시비부담 시행(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사업포기 시 용역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안내 후 용역 착수</li> </ul>
<b>설계 및 조경공사</b> (건축주가 조경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주가 조경업체를 직접 선택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li> </ul>
<b>준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b> (시 → 자치구 → 건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주가 조경업체 선정</li> <li>- 건축주 자부담액을 시공업체에 지급 후 보조금 요청</li> <li>- 자치구의 현장 확인 후 시비 재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설계심의 및 착공도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감독 후 보조금 신청</li> </ul>
<b>정산 및 세금계산서 제출</b> (건축주 → 자치구 → 시) 	<p>※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정산확인서, 국세청 e-세로시스템의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시로 제출</p>



# 5장

## 참 고 사 항



## 1. 건설산업 범위 및 계약 분류

### ☞ 건설산업 범위

구 분	종 류
건설(시공)업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업 · 주택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각기 특별법으로 규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건설용역업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설계업 (건축사법)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진흥법)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는 건설업영역에서 제외

### ☞ 계약분류

계약 목적물별	계약체결 형태별	경쟁 형태별	낙찰자결정 방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건설공사</li> <li>- 전문건설공사</li> <li>- 전기공사</li> <li>- 정보통신공사</li> <li>- 소방공사</li> <li>- 문화재공사</li> <li>- 환경관련 공사 등</li> </ul> </li> <li>•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용역</li> <li>- 일반용역</li> <li>- 학술용역</li> </ul> </li> <li>• 물품제조·구매 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계약/개산계약</li> <li>•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li> <li>• 총액계약/단가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단가계약</li> </ul> </li> <li>• 장기계속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비계약</li> <li>단년도계약</li> </ul> </li> <li>• 단독계약/공동계약</li> <li>• 회계연도개시전계약</li> <li>• 종합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입찰</li> <li>- 제한입찰</li> <li>- 지명입찰</li> </ul> </li> <li>• 수의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심사 낙찰제</li> <li>• 협상에 의한 계약</li> <li>• 최저가 낙찰제</li> <li>• 종합평가 낙찰제</li> <li>• 최적가치 낙찰제</li> <li>• 희망수량경쟁입찰</li> <li>•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li> <li>• 2단계 경쟁입찰</li> <li>• 규격, 가격분리동시입찰</li> <li>• 공모에 의한 계약</li> </ul>

## 2. 계약 방법별 흐름도



### 3. 공동계약 유형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 표 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최종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다만,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 관련구성원 연대책임)
하 도 급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가능	각자 책임하에 일부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실적인정	◦금액 – 출자비율로 산정 ◦규모 – 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전체설적 ◦구성원–분담시공부분
지연배상금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납부	공사 자체를 야기시킨 자가 납부	분담이행방식과 동일
현장대리인 선임	구성원간 협의하여 선임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되어 주계약자가 총 괄하여 현장대리인 배치
안전관리 및 산재보험 등 관리	안전관리는 출자비율로 부담하여 공동운영하고 산재보험 등은 대표자가 가입 납부	안전관리는 분담내용별로 구성원 각자가 책임지고 산재보험 등도 각자 가입 납부	안전관리는 구성원이 공동부 담하여 주계약자가 관리하고 산재보험 등도 주계약자가 가입 납부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공사에 유리 ◦건축, 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등

## 4. 낙찰자 결정 방법

구 분	개념	근거조항
희망수량입찰	다량의 수요물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7조
2단계 입찰	2단계 경쟁입찰 (원칙)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물품 용역 계약의 경우 1단계로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해 2단계로 가격입찰 실시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 분리 (예외)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가능한 결정 방법으로 유사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이행실적, 재무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설계공모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안전성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안전행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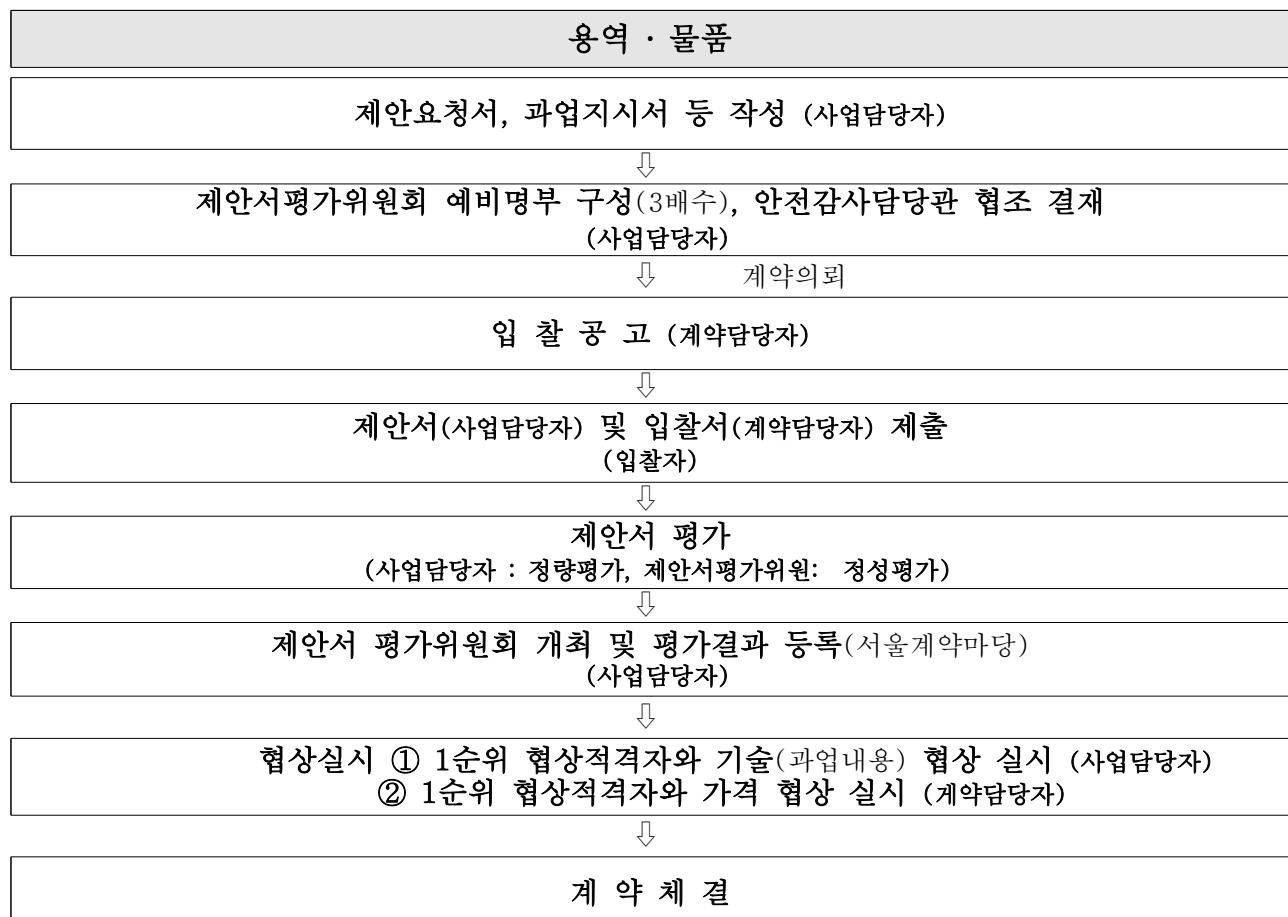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희망수량입찰	없 음	없 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 해당하는 경우	
2단계 입찰	2단계 경쟁입찰 (원칙)  규격·가 격분리 (예외)	없 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해당하는 경우 (단순 노무 등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해당하는 경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없 음	없 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해당하는 경우	
적격심사 낙찰제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 300억원 미만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범위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상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가능			
종합평가 낙찰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없 음	없 음	
설계공모	없 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해당하는 경우	없 음	
협상에 의한 계약	없 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해당하는 경우 (단순 노무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해당하는 경우 (단순 물품구매 제외)	

## 5.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 ○ 대상

구분	주요내용
용역·물품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필요시(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단순 물품구매는 협상계약 불가)
지식기반 사업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협상계약 우선 적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나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li> </ul> </li> <li>·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li> <li>·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li> <li>·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li> <li>·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li> <li>·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li> <li>·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li> <li>·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사업</li> <li>·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li> </ul>

### ○ 진행절차



## 6. 기술용역 적격심사 절차

### PQ 대상 용역

- ①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 → 2.1억원(기재부장관 고시금액)
- ②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1억원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평가



평가결과 통보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금액, 대상기준 충족시)



입찰 및 개찰  
(가격제안서 제출)



적격심사  
(평가점수 + 가격점수 환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 PQ 비대상 용역

기준금액 미만



입찰공고



입찰 및 개찰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 7. 턴키(설계·시공일괄 입찰) 절차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 2011.09.15.부터 시행(경기법시행령 개정)

- 설계적합최저가, 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 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가격 최상 설계 등



공사 입찰안내서심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공사 발주 의뢰

발주기관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입찰

조 달 청



기본설계 적격심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서울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조 달 청

1. 설계적합 최저가 : 설계적합자 중 최저가격 제시 업체
2. 입찰가격 조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
3. 설계점수 조정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가 되는 업체
4. 가중치 기준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
5. 확정가격 최상설계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실시설계 적격심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서울시)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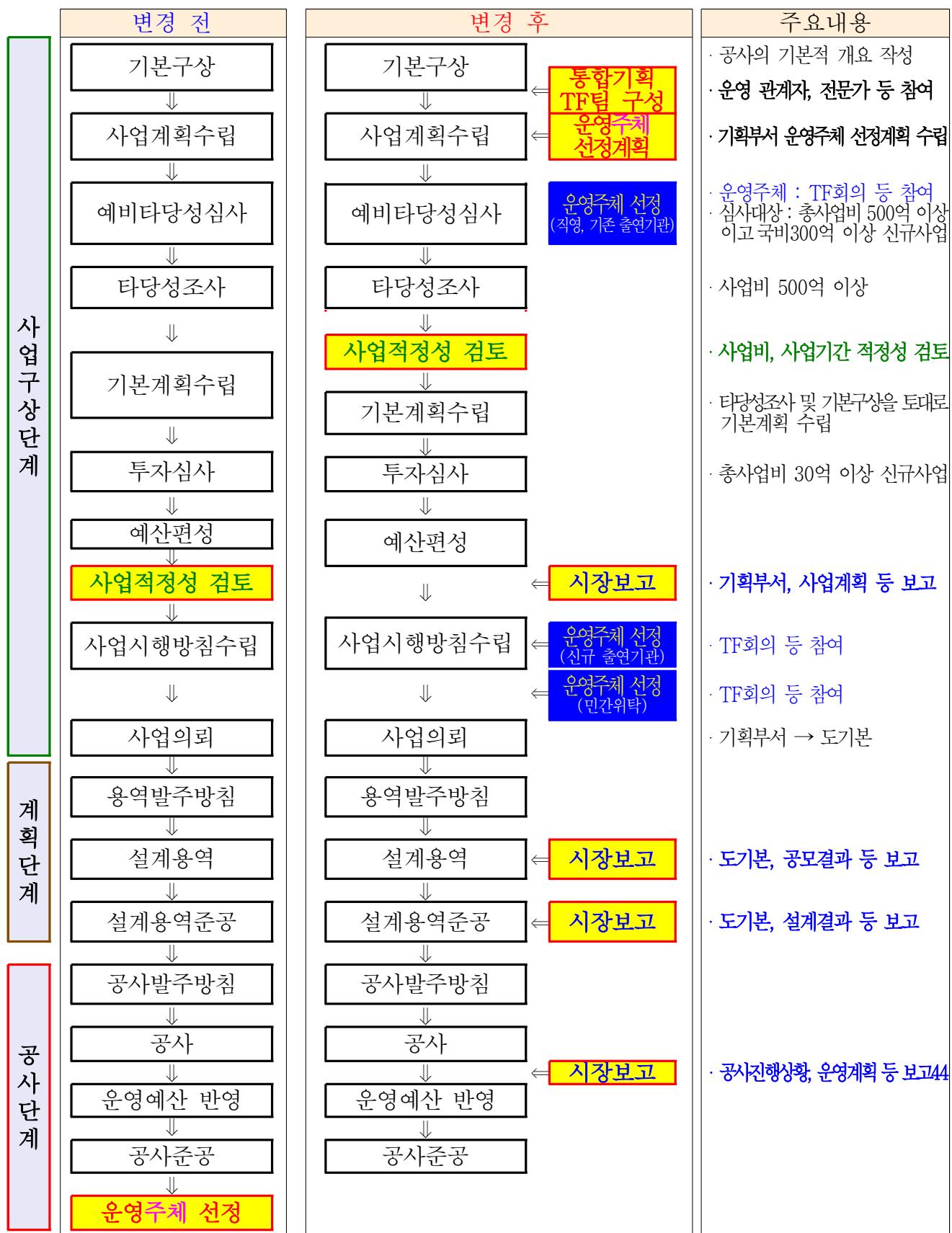
조 달 청



착공

발주기관

## 8. 공공건축물 사업추진 개선 절차도



\* “운영자 맞춤형 설계 및 보고체계 구축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시장방침 제26호, ‘16.2.10., 건축부)” 발췌